



2015년 국방예산 의견서

2015년 국방예산 평통사 의견서

발 행 일 2014. 11. 5
발 행 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담 당 조승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 02-712-8443 spark946@hanmail.net

차례

| | |
|-----|--------------------|
| 01 | 장교 인건비 |
| 13 |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
| 18 | 차기전투기(F-X) |
| 25 | 전투예비탄약 중 155mm 전단탄 |
| 27 | 광개토 III batch-II |
| 32 |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
| 40 | 지휘통제통신사업 |
| 45 | 국군 사이버사령부 |
| 51 | 국방행정지원 |
| 56 | 군인연금 기금 |
| 60 | 평택기지 이전사업 |
| 63 | HUAV |
| 68 | 현무 2차 성능 개량 |
| 71 |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사업 |
| 73 | 패트리엇 성능 개량 |
| 78 | 패트리엇 요격미사일(GEMT) |
| 83 | 철매 II 성능 개량 |
| 87 | 차기다련장 |
| 89 | 다목적정밀유도 확산탄 |
| 92 | 장거리대잠어뢰 |
| 94 | 대형공격헬기 |
| 98 | 소형무장헬기 |
| 102 |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
| 104 | K11 복합형 소총 |
| 107 | 제주해군기지 |

장교인건비(1100-151)

1. 개요

(단위 : 억원)

| 소관 | 사업 성격 | 2014년예산(A) | 2015년 예산안(B) | 증가(B-A) | 삭감 요구액 |
|-----|-------|------------|-----------------|---------|-----------|
| 국방부 | 계속 | 37,415 | 38,967 | 1,553 | 1,237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사업목적 장교 72,142명의 봉급 및 제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 ② 2015년 장교인건비 증액의 주요사유 ‘공통처우개선 소요’ 1,472억원, ‘군구조개편에 따른 장교 312명 증원 소요’ 80억원, ‘전직지원교육 별도정원’ 29억원, ‘의무인력확대’ 9억원 등.
- ③ 장교인건비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부 인건비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급여인상 추진”
 - “국방개혁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정병력 증원소요 반영”(국방부, 『2015년도 예산안사업설명자료(Ⅱ-1)』, 2014.9, 66쪽)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 ① 대규모 집행잔액의 연례적인 발생의 반복은 장교인건비가 과도하게 산정되고 있음을 말해줌
 - 국회의 예결산 심사 때마다 장교인건비에 대해 “과부족이 최소화되도록 적정인건비 편성방안 강구”를 주문하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에도 239 억원이나 되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 이는 장교인건비가 과도하게 산정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것이다.

<표1> 장교 및 부사관 인건비 예산 및 이전용 현황(단위:억원)

| 연도 | 장교 인건비 | | 부사관인건비 | |
|------|--------|------|--------|-------|
| | 예산액 | 이전용 | 예산액 | 이전용 |
| 2010 | 33,202 | -761 | 33,710 | 587 |
| 2011 | 34,319 | -542 | 35,616 | 648 |
| 2012 | 35,388 | -364 | 37,991 | 1,154 |
| 2013 | 36,656 | -239 | 40,053 | 1,598 |

- 장교인건비의 대규모 집행잔액의 연례적 발생은 허수가 많은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기 때문이다.
-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14.4)은 <봉급=정원(직급별)×기준단가(직급별)×12월×(1-결원율)>의 산식을 적용해 봉급을 산출하되 ‘결원율’은 ‘각 중앙관서의 2014년도 예산서 상의 결원율을 적용’(위 자료 9쪽)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결원율을 0%로, 즉 결원율을 무시하고 정원 그대로 인건비 예산을 산정해 왔다. 2011년 2월 기준으로 장교는 현원이 68,231명이었는데 정원은 71,440명이다. 결원율이 4.5%인데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원대로 인건비를 산정하면 장교인건비는 3209명만큼 더 많이 산정되는 것이다.
- 장교인건비의 대규모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원이 아닌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 그리고 장교 정원은 국방개혁에 따라서 축소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장교정원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장교정원은 현원에 접근하게 될 것이고 장교인건비의 과도한 산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방부가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결원율을 반영하지 않고 정원 그대로 예산을 산정하고 또 정원도 줄이지 않는 것은 정원감소와 그에 따른 국방예산의 삭감으로 빚어질 수 있는 기득권 축소를 반기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원’은 인력운영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적 기준이 되기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되어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인건비 책정을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군의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 인력을 운영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방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11, 142쪽)한다는 국회 국방위의 지적처럼 장교 정원의 현

실화 즉 축소는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합리적인 인력운용과 방만한 군조직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② ‘간부(장교) 1,000~1,500여명을 감축하여 연간 인건비 1,0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국방부의 약속이 실종되고 있음

- 국방부는 2011년 3월 7일 ‘국방개혁307계획’을 발표하면서 “각군 본부와 작전사 통합, 국군 군수사·교육사 창설 등으로 장군 30여명, 간부 1,000~1,500명이 줄어들고 예산은 연 1,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국방일보 2011.3.8)라고 하였다.

<표2> 최근 5년간 장교인건비 증가추이(단위:억원)

| 연도 | 장교인건비 (예산) | 증가액 (전년대비) | 연도 | 장교인건비 (중기재정계획) | 증가액 |
|------|---------------|---------------|------|-------------------|-------|
| 2011 | 34,319 | 1,117 | 2014 | 37,415 | |
| 2012 | 35,388 | 1,069 | 2015 | 40,020 | 2,605 |
| 2013 | 36,656 | 1,268 | 2016 | 42,822 | 2,802 |
| 2014 | 37,415 | 759 | 2017 | 45,819 | 2,997 |
| 2015 | 38,967 | 1,552 | 2018 | 49,027 | 3,208 |

- 하지만 장교인건비(예산기준)는 2011년 1,117억원, 2012년 1,069억원, 2013년 1,268억원, 2014년 759억원이 늘었고 2015년에는 무려 1,552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 국방중기재정계획(2014~2018)도 ‘적정병력증원 소요’를 위해 장교인건비를 2014년 3조7,415억원에서 2018년까지 매년 2,600~3,200억원씩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중기재정계획대로 된다면 장교인건비는 앞으로 매년 2천 또는 3천억원 대의 증가액을 기록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 상부행정(지휘)조직을 구조조정하여 장교인건비를 1,000억원씩 매년 절감하겠다는 국방부의 대국민 약속은 완전히 허언이 되었다.

③ 72,142명으로의 장교정원 증가는 7.2만에서 7만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

- 2015년도 장교인건비에서 심각한 문제는 장교정원이 국방부 스스로 밝힌 장교정원의 가이드라인인 7.2만명을 넘어서까지 증가되는 것이다. 국방계획기본계획(2012~2030)은 장교정원을 7.2만명(71,500명선)에서 7만명으로 줄일 것임을 밝히고 있다.
- 장교정원의 증가가 납득될 수 없는 이유는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각군본부 등 상부지휘(행정관리)조직이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또 지휘구조가 복잡하여 이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당면 과제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표3> 최근 장교 예산편성정원 추이(단위 : 명)

| 연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장교(준위포함) | 71,440 | 71,701 | 71,756 | 71,846 | 72,142 |
| 장교(준위제외) | 65,003 | 65,259 | 65,323 | 65,441 | 65,720 |
| 영관장교 | 20,440 | 20,662 | 20,777 | 20,865 | 20,964 |

- 국방부 본부의 직제는 2008년 1차관 5실 18관(국) 74팀에서 2012년 1차관 5실 18관 70팀으로 줄었다가 2014년에는 1차관 5실 19관 71·팀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국방부의 정원은 2013년 1월 1245명에서 2014년 5월 1일 1,257명으로 12명(영관 5명, 위관 5명 포함)늘었으며 이중 현역군인도 325명에서 333명으로 늘었다. 합참은 2008년 4본부 2참모부 10부5처4실85과에서 2012년 4본부13부 13실·처 87과로 늘었다. 합참의 정원은 2013년 1월 838명에서 2014년 5월 845명으로 늘었고 이 중 현역은 712명에서 716명으로 늘었다.
- 장교정원의 증가를 납득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에 의한 불법적인 비편제직위의 광범한 운영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육군본부와 국방부(본부, 합참, 국직부대, 외부기관)가 법규를 어기고 운영해 온 편제에 없는 잠정편제(직위)가 2013년 10월 현재 각각 1,685개와 98개에 이른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의 폐지를 요구하였다.(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지상전력 운용 및 관

리실태”, 2014.3) 장교정원이 느는 것은 이런 비편제 직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원화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되는 것이다.

- 사실은 장교의 현원이 7만명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원을 현원에 맞추어 현실화하면 지금이라도 7만명으로 줄인다는 국방부의 목표는 쉽게 달성될 수 있고 이것이 예산의 적정한 책정이나 인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④ 방위사업청의 문민화(군인정원의 축소)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국방부

- 감사원은 2014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에게 “방위사업청의 군인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다.¹⁾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2014.7)보고서는 방위사업청의 군인정원 비율을 전체 정원의 30%이하로 줄이기로 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방침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예산, 복지비 등 과다지출’이나 ‘투명성 보장 및 전문성 축적·활용 제한’ 등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위 감사원자료, 11~13쪽 참조)

<표4>과장급· 담당급 연봉 및 퇴직연금 비교(2013년도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 계급(직급) | 연봉 | | 퇴직연금(월) |
|----------|--------|------|--------|---------|
| | | 평균호봉 | 금액 | |
| 과장급(서기관) | 대령 | 15-1 | 93,574 | 3,900 |
| | 4급 | 23 | 70,520 | 3,170 |
| | 차액 | | 23,054 | 730 |
| 담당급(사무관) | 중령 | 15-3 | 89,465 | 3,500 |
| | 5급 | 18 | 54,562 | 2,930 |
| | 차액 | | 34,903 | 570 |

자료출처: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2014.7, 7쪽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2013.9.17) 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는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895인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 <표4>와 같이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군인과 공무원이 같은 직급인데도 군인은 공무원보다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런 공무원과 군인의 임금격차로 군인에게 급여로 연간 204억원과 퇴직연금 등이 과다 지출되고 이외에도 장군승용차 운전병 10명 등 추가인력 운영, 장군승용차 유지 및 구입비, 재직군인에 대한 전세자금 무이자대출 등 여러 명목의 비용 등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감사원은** 2014년 3월 12일 현재 방위사업청의 군인(모두 장교)이 835명(장성 10명 포함)이고 공무원(정원)이 821명인 바 문민화비율 70%에 맞추어 군인정원을 줄이고-그 경우 군인정원을 339명 줄여야 한다-이를 공무원으로 교체하면 많은 예산절약이 가능하다면서 군인정원 감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2년 8월에도 방사청의 군인정원 820명 중 필수직위 322명을 제외한 498명의 직위에 모두 공무원을 임명할 경우보다 인건비가 연간 88억원만큼 초과지출되고 있다고 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문민화(공무원과 군의 인력구성 비율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을 준용하여 70%이상이 공무원이 되도록 하는 것)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2012.8, 8쪽) 할 것을 방위사업청장 및 국방부에 요구한 바 있다.

<표5>방위사업청 정원변동 현황(단위 : 명)

| 연도 | 군인(장교) | 공무원 | 계 |
|----------------------------|------------|------------|---------------|
| 2006.1.1 | 853(51.4%) | 807(48.6%) | 1,660(100.0%) |
| 2013.12.12 | 832(50.3%) | 821(49.7%) | 1,653(100.0%) |
| 2014.3.12 | 835(50.4%) | 821(49.6%) | 1,656(100.0%) |
| 2015(예산편성정원) ²⁾ | | 848 | |

- <표5>를 보면 방사청의 공무원 정원이 2015년에 27명 느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방사청의 군인정원이 2015년에 공무원정원이 늘어난 만큼 줄어든다고 가정하더라도 문민화비율은 51.2%로 70%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군인정원을 방사청 정원(2014년 3월 기준 1656명)의 30%로까지 낮추려면 군인정원을 339명 더 줄여야 한다.

2) 2015년도 방사청의 군인정원이 얼마인지는 확보하지 못하였음

〈표6〉 최근 장교 증감 추이

| 연도 | 군구조개편에 따른 장교 증감 | | 별도정원(전직지원 교육/의무인력) |
|------|-----------------------|------------------|---------------------------|
| | 증원 | 감축 | |
| 2011 | 서방사 창설 145 | 중소위 307 | |
| 2012 | 구조개편 310 + 서방사 145 | 중소위 260, 준위 9 | 75(전직지원교육) |
| 2013 | 215 + 서방사 145 | 284 | 47+ 30(의무인력) |
| 2014 | 군구조개편 233 | 231 | 58+ 30 |
| 2015 | 군구조개편 312 | 16 | 58+ 30(증원계속) 군의관 신규 23 |

- 〈표6〉을 보면 2015년에 구조조정에 따른 장교감축은 16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2015년도 방사청의 군인정원은 전혀 줄지 않거나 준다 하더라도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즉 방위사업청의 군인정원을 감축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라는 감사원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⑤ 군구조개편을 위해 장교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국방개혁을 왜곡하고 후퇴시키는 것이다

- 2015년 장교는 새로이 312명이 증원되고 16명이 감축된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군구조개편에 따라 간부중심의 정예장군 육성 및 부대 증·창설 소요 충족을 위한 장교증감 소요”(국방부, 『2015년도 예산안사업 설명자료(Ⅱ-1)』, 2014.9, 64쪽)라고 말한다.
- 그러나 ‘군구조개혁’이란 상식적으로 방만하고 비대한 군조직의 슬림화 즉 기구와 인력의 축소, 지휘구조의 단순화를 의미하지 그 반대는 아니다. 그런데 〈표6〉를 보면 군구조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구조개편으로 줄어드는 수보다 늘어나는 장교 수가 많다. 그리고 줄어드는 장교도 대부분 중소위 등 하위계급이고 늘어나는 장교는 상대적으로 고위장교들이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선진정예장군 육성’(제1조)이라는 국방개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국방개혁의 이념)로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

의 개선’,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군구조개편은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수단인 만큼 방만하고 비대한 군조직을 체중감량하고 다단계의 복잡한 지휘구조를 간소화함으로써 병력집약적 군구조를 기술집약적이고 기동성 있는 조직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 이런 점에서 2015년도에 장교 16명만 감축되고 그보다 몇 배 많은 장교가 증원되는 것은 군 몸집불리기이며 이를 군구조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실행하는 것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예강군육성’과 그 수단인 ‘군구조개편’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다.
- 전직지원교육이나 의무인력 확대를 위한 별도증원도 납득되지 않는다. 전직지원교육이나 의무인력 확대 소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즉 장교 전체의 정원을 기존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2011)도 군구조의 간소화라고 하는 국방개혁의 요구를 유보하거나 정지시켜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서방사는 상부지휘구조의 간소화, 군조직의 슬림화, 군인력운영의 효율화의 요구에 거슬러 무리하게 창설됨으로써 지휘구조의 복잡화와 부대의 중복, 장병의 업무과중, 전력의 과잉배치, 남북 군비경쟁 격화와 더욱 첨예화된 대결 등 슬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서방사 창설이후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충돌이나 교전이 줄기는커녕 더욱 증가함으로써 서해상의 안보는 더욱 위태롭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서방사는 해체하고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를 비군사적 수단으로 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⑥ 2015년에 장성정원 감축이 한명도 없다

<표7> 연도별 장성 예산편성정원 (단위 :명)

| 회계연도 | 2007 | 2008~2012 | 2013 | 2014 | 2015 |
|------------|------|-----------|------|------|------|
| 장성(예산편성)정원 | 442 | 444 | 441 | 441 | 441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각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설명서』

- 장성감축은 국방개혁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다. 국방부는 『상부지휘구조개편 : 우리 군을 전투임무중심의 조직으로 바꾸겠습니다』(2011년)라는 책자에서 “2020년까지 장군정원의 15%선인 약 60명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는 “단순히 예산감축을 위한 수치가 아니라 전투 및 조

직능률을 강화하는 군구조개편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산출(강조 국방부)한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국방부는 ‘상부지휘조직의 슬림화’와 ‘한시기구와 軍外부서의 장군정원의 최소화’, ‘비전투부대직위 감축 또는 적정계급으로의 조정’을 제시하고 있다.
- 그렇지만 2011년으로부터 4년이 흘렀지만 2013년에 장성급정원이 3명 줄었을 뿐이다. 올해(2014년)에 이어 내년에도 장성급정원 감축은 없다. 441명의 장성급정원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정원이다. 관행적으로 정원 외 운영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실제 운영되는 장성은 이 수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2013년의 3명 정원축소는 아무 의미도 없다.

⑦ 고급장교정원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교정년 연장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해

- 국방부는 직업군인이면 누구나 퇴직 후에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교계급의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안에 의하면 장교의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이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이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연합뉴스 2014.4.13) 국방부는 “계급별로 1~3년 정년을 연장할 경우 2016~2030년 인건비는 260억원 정도 증가하지만, 연금은 210억원정도 줄어”든다고 주장하였다.(세계일보 2014.4.14)
- 장교정년이 연장되면 연금이 준다는 국방부주장은 궤변이다. 왜냐하면 대위나 소령, 중령, 대령계급으로 퇴직했을 장교들이 정년연장이 되면 1~2계급 높은 계급으로 퇴직하게 되거나 퇴역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을 장교들이 매년 퇴역연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연금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불문가지다.
- 그런데 장교정년 연장은 연금문제 이전에 인사문제다. 장교의 연령정년이 느는데 각 계급별 정년 특히 고급장교의 정원이 크게 늘지 않으면 심각한 인사적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올해 국방부가 장교정원을 7.2만명을 넘어서까지 연장한 것은 장교의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 현재 군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도한 고급장교인력운영과 그에 따른 진급적기 경과자 양산, 군의 노쇠화, 정원 외 초과운영의 관행화, 군진급인사를 둘러싼 치열한 암투 등의 폐해는 그 상당부분이 1989년과 1993년

두 차례 연령정년 연장에서 비롯된다.

- 만약 장교의 연령정년을 진정 연장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대병력 특히 포화상태인 고급장교인력을 30~40% 줄인 이후여야 하며 그래야 그나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⑧ 국방비의 경직성을 줄이고 국방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재하다

- 우리 국방비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인건비의 과다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성(경직성)이다. 병력운영비(넓은 의미의 인건비)는 2015년 예산 기준으로 국방예산(일반회계)에서 41.5%를 차지한다. 전력유지비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성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인건비는 국방예산의 절반 가까이된다.

<표8>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 방위력개선비 비중(단위:억원)

| 구분 | 2014년 | 2015년 | 증가율 |
|--------|----------------|----------------|------|
| 병력운영비 | 148,409(41.6%) | 155,810(41.5%) | |
| 전력유지비 | 103,551(29.0%) | 108,132(28.8%) | |
| 방위력개선비 | 105,096(29.4%) | 111,658(29.7%) | 6.2% |
| 계 | 357,056(100%) | 375,600(100%) | 5.2% |

주: 병력운영비에는 인건비와 법정부담금(군인연금부담금포함),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됨.

-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비정비와 장병의 교육훈련·사기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전력유지)예산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전력유지비는 28.8%로 병력운영비에 비해 그 비중이 12.7%나 낮다. 또 방위력개선비도 비중을 높이는데 제약된다.
-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위해서는 전력유지비와 방위력개선비를 높여야 하지만 인건비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인건비를 대폭 줄이지 않는 이상 선진정예강군은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 그런데 인건비를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장교인건비 그 가운데서도 고급장교 인건비다. 비중으로 치면 장교인건비는 42.2%로 부사관보다 낮지만 1인당 예산으로 치면 5400만원으로 부사관에 비해 월등히 높다.

<표9> 군인신분별인건비

| 구분 | 합 | 장교인건비 | 부사관인건비 | 병인건비 |
|---------|--------------|--------------|--------------|------------|
| 예산(억원) | 92,445(100%) | 38967(42.2%) | 45,244(48.9) | 8,234(8.9) |
| 인원(명) | 638,812 | 72,142 | 116,930 | 449,740 |
| 1인당(만원) | 1,447 | 5,400 | 3,870 | 180 |

- 고급장교는 보수도 다른 계급에 비해 높고 부대 또는 군조직에서 높은 직책을 맡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운영비가 많이 든다. 뿐만 아니라 정원 외 초과운영되기 일췌고 그렇지 않아도 정원이 과도할 정도로 팽창되어 있어 인건비를 압박하는 큰 부담이다.
- 하지만 2015년도 장교인건비에서는 고급장교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영관장교 정원은 2014년보다 무려 99명이나 늘어난다.

<표10> 연도별 영관급 장교 예산편성정원 및 현원(단위 : 명)

| 연도 | 1993 | 2007 | 2008 | 2009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정원 | 17,870 | 20,517 | 20,517 | 20,430 | 20,662 | 20,777 | 20,865 | 20,964 |
| 현원 | 19,053 | 20,403 | 20,100 | | | | | |

자료출처:정원은 각년도 정부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설명서, 현원은 국방통계연보

4. 장교인건비 예산 삭감 요구

① 장교 정원은 7만명에서 동결한다

- 장교 정원 72,142명은 70,000명으로 줄인다
- 정원 조정에서 고급장교 정원을 축소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 영관장교 정원은 20,000명에서 동결하되 중령과 대령에서 정원을 축소한다.
- 장성정원은 최소 10명을 줄인다.(2015~2020년 사이에 최소 60명 감축을 목표로 한 수치임)
- 신규 장교증원은 불허한다. 다만 전직지원교육 별도정원과 의무병력 별

도 정원은 인정하되 이는 별도 정원이 아니라 장교정원 7만명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② 군인에 대한 2직급 높은 대우 관행을 폐지하여 인건비를 절감한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2014.7)보고서가 보여주듯이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2직급 높은 대우를 받는다. 이런 군인과 공무원의 대우 차이는 과거 전두환정권 때 제정된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국무총리훈령 제157호, 1980.7.29, 제정) 및 총무처 예규219호(1986.6.17)에 따른 것으로서 진작 폐기되었어야 할 군사독재정권의 유물이다.
- 이는 군인에게 잘못된 특권의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불필요하게 팽창시켜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인에 대한 보수기준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③ 삭감액 1,237억원

장교 정원삭감 2,142×1인 평균 연인건비 5,400만원=1,157억원
2015년도 장교 312명 증원 소요 80억원 삭감

(169)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1735-339)

1. 개요

(단위 : 백만 원)

| 소관 | 사업 성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15년 예산안(B) | 삭감 요구액 |
|-----|-------|-----------|--------|-----------------|-----------|
| 방사청 | 신규 | 1,097,200 | 15~23년 | 7,997 | 7,997 |

2. 방사청이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 효과

- ① 북한과 주변국의 탄도유도탄 공격 위협 증가에 따라 주요 군사시설 및 산업 시설에 대한 다층방어개념의 탄도유도탄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보다 높은 고도에서 Hit-To-Kill 요격체계 연구 개발 필요.
- ② 장거리 탐지 레이더로부터 표적 정보를 획득해 원거리/고고도에서 조기에 요격함으로써 방어시설 피해를 최소화.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사업 성격** : L-SAM 사업은 종말 상층(중·고고도) 단계 내·외기권(고도 40~150Km)에서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MD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 ② **대 국민 약속 파기** : 국방부는 그 동안 누누이 종말 상층(고고도) MD 체계를 개발,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2013년 5월 한미 정상 회담 직후에 언론들이 한국의 미국 MD 가입 의구심을 제기했을 때도 국방부는 “한반도 지리적 환경에서는 상층방어 MD보다는 하층방어 MD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우리 군은 상층방어를 위한 MD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2013. 5. 8)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L-SAM 사업을 통해 종말 고고도, 내·외기권 요격체계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상층방어체계를 도입하지 않겠다던 국방부의 국민 약속은 거짓말이 되었다. 국방부는 L-SAM이 종말 중고도(40~60Km) 요격체계로 상층요격체계가 아니라고 둘러댈 수도 있으나, 고도 40Km 이상 요격체계는 사드와 같이 상층요격체계로 분류된다. 또한 국방부는 L-SAM을 종말 고고도(80Km 이상)와 외대기권(100Km 이상) 요격이 가능한 체계로 개발하리라는 것은 거의 필연이며, 이는 한국으로 날아올 중국 등의 탄도미사일을 중간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다.

③ **무기 효용성 낮아** : L-SAM은 종말 상층방어체계로, 상층방어체계는 국방부의 주장대로 한반도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L-SAM은 요격 고도 40Km 이상의 종말 중·고고도 및 고도 100Km 이상의 외대기권 요격 체계로 노동미사일과 같은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요격에 적합하다. 그러나 노동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를 견제할 목적에서 일본이나 오키나와를 타격하기 위한 체계로 북한이 남한 공격에 보다 효용성이 높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나두고 굳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L-SAM의 주 요격 대상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방어중심이 지극히 짧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층(중·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점 고도도 낮아 정점 고도가 아예 L-SAM 요격 고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요격 고도 이상으로 비행한다고 해도 비행 시간이 매우 짧아 곧 요격 가능한 고도 아래로 하강해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이나 생화학무기 등을 장착한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층권(40Km 내외)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L-SAM 개발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주장은 근거 없다.

④ **다층방어체계 구축 사업목표 달성 불가능** : L-SAM 개발로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허구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L-SAM으로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면 철매-Ⅱ 성능 개량 사업과 PAC-3 등의 도입으로 종말 상·하층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사업 목표는 달성이 불가

능하게 된다. 다층방어체계는 적어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중간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했을 경우 다시 종말 하층단계에서 다시 요격을 시도할 시간이 있을 때나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렇지 않고 국방부 주장처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말 중고도에서 요격하고, 다시 종말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식의 다층방어체계는 양자 사이의 고도와 시간차가 매우 짧아 성립할 수 없다.

⑤ **Hit-To-Kill 요격 체계 개발이라는 사업목표 달성 불가능** : 국방부는 L-SAM 체계의 요격미사일을 Hit-To-Kill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it-To-Kill 방식을 불과 몇 년 만에 개발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Hit-To-Kill 방식은 미국만이 유일하게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개발에 걸린 시간도 30년을 헤아린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의 기술 지원도 없이 독자적으로 불과 8년 안에 개발하겠다는 것은 억지다. 특히 PAC-3에 비해 사드의 Hit-To-Kill 방식은 보다 큰 어려움에 부딪혀 왔으며, 특히 개발 성공을 실전에서 실증할 근거가 없다.

⑥ **중국 등 주변국 탄도미사일 위협 대비라는 잘못된 사업 목적** : 국방부가 상층방어체계를 구축하지 않겠다는 대 국민 공언을 저버리거나 한반도에서는 상층방어체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을 들여 기어코 상층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는 사실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체계를 구축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대중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미 중국이 한국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한중 적대적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 MD와 삼각 군사동맹 구축 등을 통해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군사전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국방부의 L-SAM 개발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이를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비는 구실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이 미 MD에 가입하지 않고, 그 결과 대중 적대적 관계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L-SAM 도입은 불필요하다. 이렇듯 L-SAM 사업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에 편승하기 위한 잘못된 국가안보전략의 파생 사업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결국 L-SAM 사업은 대중 적대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 ⑦ **대미 군사적 예측 확대 심화** : 한국이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체제에 가입해 중국과 적대하게 되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 MD 작전의 전진기지로서 전략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L-SAM 도입을 넘어 대중 MD 작전에서 보다 높은 성능을 발휘할 사드, 나아가 SM-3 요격미사일 도입까지 강요받게 될 것이며, MD 정보, 요격작전 등에서 미국에 전면 예측될 것이다.
- ⑧ **타당성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문제점** : L-SAM 사업은 예산의 규모나 잘못 설정된 사업 목표, 달성 불가능한 사업 목표를 내세우고 있어 반드시 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 조사 실시 대상 사업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보 사안이라고 해서 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다. 이는 국가재정법의 결함과 기획재정부의 직무유기를 드러낸 것이다. 국가안보 사안이라면 더 엄격히 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공신력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내세워 타당성 및 예비 타당성, 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불요불급한 무기를 터무니없게 비싼 가격으로 도입해 온 국방부의 잘못된 관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군피아에 의한 부정·부실한 무기도입과 예산 횡령, 낭비 사례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타당성, 예비타당성, 본 타당성 조사 강화가 절실하다. 이에 국가재정법 38조 4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나 50조 3항에 의거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국회가 결의해야 한다.
- ⑨ **중복 투자로 예산 낭비 가능성 커** : 한국이 러시아 기술을 지원 받아 철매-II를 개발했으나 이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으며, 따라서 이를 개량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려는 철매-II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한 신뢰도 또한 매우 낮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PAC-2의 PAC-3로의 성능 개량과 PAC-3탄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PAC-2 도입 비용의 상당 부분과 철매-II 개발 비용 등 수조 원의 예산이 이미 낭비된 셈이다. L-SAM 개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L-SAM을 개발해도 신뢰도가 낮거나 미국의 압력으로 다시 사드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L-SAM 개발과 생산비 등 수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낭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는 국

가재정법 50조 3항에 근거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결의해야 한다.

- ⑩ **결론 및 건의 사항** : 이렇듯 L-SAM 사업은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효용성이 극히 낮으며, 특히 대중 적대관계를 전제하는 잘못된 사업 목적과 Hit-T-Kill 개발이라는 달성 불가능한 사업 목적을 내세우고 있고,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4. 삭감 요구액

- 79억9,700만원 전액

(205)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F-X) (1331-307)

1. 개요

(단위 : 백만 원 %)

| 소관 | 사업 성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15년 예산안 | 삭감 요구액 |
|-----|-------|-----------|--------|-----------|---------|
| 방사청 | 계속 | 7,341,825 | 12~21년 | 354,044 | 354,044 |

2.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

- ①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 능력 구비
- ②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 ①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 능력 구비라는 F-35 사업 목적의 허구성과 위험성과 불법성

- F-35 사업 목적의 허구성 : 한국군은 이미 7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대남 공격을 억제, 방어할 수 있는 대북 우위의 육·해·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군의 대북 압도적 우위 전력은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북한이 우위에 있다는 미사일 전력도 속설과 달리 양질에서 남한이 우위에 있다. 유일한 북한 우위의 비대칭 전력은 핵뿐이다. 그러나 이를 대북 선제공격으로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은 전 미국 국방장관 페리의 증언이나 핵전력 우위의 미국도 소련을 선제공격하지 못했던 냉전 하 미소 대결 구도가 입증해 주고 있다. 남한의 대북 재래식 선제공격은 오히려 북한의 대남 핵공격을 자초하는 것이며, F-35를 이용한 대북 선제공격으로 대북 적극적 억제 능력을 구비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의 허구이자 기만이다.

- **F-35 사업 목적의 위험성** : 한미 양국이 도입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는 전략으로,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촉발하는 전략이다. 소위 킬 체인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는 수단이며, 바로 F-35는 킬 체인의 핵심 타격전력으로 선제공격을 통한 전면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큰 무기 체계다.
- **F-35 사업 목적의 불법성** : 대북 적극적 억제 전략, 곧 대북 선제공격 전략은 선제공격을 부정하고 평화통일을 천명한 우리나라의 헌법 5조 1항과 선제공격과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한 유엔헌장 51조를 위배하는 불법 행위다.

② 구형 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F-35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대북 전력 비교에서 국방부가 남한의 우위를 인정하는 분야가 유일하게 공군 전력이다. 2014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전투기 수는 남한이 620대고 북한은 600대로 양적으로 우위에 있다. 특히 남한 전투기는 3세대 이상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 전투기는 75% 이상이 1950~60년대 만들어진 2세대 구형 전투기로 이루어져 있다.
- 또한 북한 전투기 중에서 남한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4세대 전투기는 MIG-29 30여대뿐이다. 하지만 MIG-29는 F-15K에 비하여 표적 탐색능력, 무장운용 능력, 전천후 정밀공격 능력, 전자전 능력 등 모든 부분에서 현격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MIG-29와 KF-16과의 비교에서도 공대공 교전 능력에서 KF-16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북한 무기체계 양적, 질적 평가, 한국국방안보포럼, 2010. 10, 17~18쪽)
- 또한 국방부는 도태 예정인 F-5E/F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FA-50 도입 사업을 추진, 공군에 실전 배치되었으며, 2017년까지 60대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이렇듯 구형 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이란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③ 스텔스(F-35) 기능이 대북 적극적 억제 전략 구비라는 사업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어

- 국방부가 F-35를 차기전투기로 선정한 유일한 이유는 F-35가 타 기종에 비해 스텔스 기능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텔스 기능이 만능은 아니다. F-35가 도입될 2018년이면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개발되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스텔스가 만능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4~5년 내에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가 개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으며, 미해군 참모총장 조나단 그리너트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레이더 기술 속에 스텔스나 레이더 회피 기술의 가치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또한 F-35는 스텔스 기능 유지를 위해 화력과 기동력이 떨어진다. 폭탄과 미사일 등을 내부 무장창 안에 넣고 비행해야 하고 외부에 많은 도료를 칠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린 폴리시 지는 “가상 비행 테스트 결과 F-35는 공대공 모드에서는 F-16의 기동성에도 못 미치는 성능을 나타냈으며, 폭격 임무 상황에서는 작전 반경과 적재중량에서 F-15에 뒤지는 전투기임이 드러났다.”며 F-35A 전투기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④ 한국 정부의 스텔스 기능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 대미 협상에서 스스로를 ‘을’ 의 처지로 전락시킴

- 국방부가 F-35 도입을 위해 작전요구성능에 스텔스 조건을 강화함에 따라 협상 방식이 공개경쟁입찰에서 F-35만 협상에 참여하는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한국은 대미 협상에서 ‘을’의 처지로 전락했고, 첨단기술과 큰 규모의 절충교역 확보에 실패하였다.

<록히드 마틴의 입장 변화>

| 경쟁입찰 당시 | 수의계약으로 변경 후 |
|----------------------|-------------------|
| 스텔스 동체 조립 등 핵심 기술 이전 | 스텔스 기술 이전 NO! |
| 최종 조립라인 한국 건설, 부품 수출 | 최종 조립라인 한국 건설 NO! |

- 반면 일본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한국보다 훨씬 많은 것을 미국으로부터 따냈다. 일본은 FMS 방식으로 들여오는 완제품 4대를 제외한

나머지 38대를 라이선스 생산함으로써 최신 기술을 이전받고 엔진과 레이다 등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한국 등 F-35 도입 국가에 대한 부품 제공과 아시아 지역의 창정비까지 맡을 수 있게 되었다.

| 한국 | | 일본 | |
|------------------------|---------|---------------------------|--|
| 40대 | 도입대수 | 42대 | |
| 대당 2억 달러 상회 | 가격 | 대당 2억4000만 달러 | |
| 한·미 동맹 강화 | 거래 외 성과 | 일본의 무기수출금지 해제 | |
| 40대 모두 완제품 구매 | 사업방식 | 4대 완제품 구매, 38대 일본생산 | |
| 수의계약 | 사업구조 | 공개경쟁 (보잉, 록히드마틴, 유로파이티) | |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 도입 | 도입시기 | 2014년 4대, 나머지는 2018년까지 생산 | |
| 일본 미쓰비시 정비 예상 | 정비 | 일본 미쓰비시 정비 | |
| 거의 없음 | 부품생산 | 일본에서 엔진, 레이다 등 50%이상 생산 | |
| 거의 없음 | 기술이전 | F-35 생산으로 첨단 항공기술 확보 가능 | |

(문화일보 F-35 도입에서 드러난 韓·日 군사외교력 2013. 11. 26)

⑤ 미국과 미 방산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외군사판매(FMS)

- F-35는 FMS 방식으로 도입된다. FMS 방식은 미국과 미 방산업체의 이해를 한국 정부에 강제할 수 있는 일방주의적 거래 방식이다. 이에 국방부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FMS 방식의 변경 여부를 질의(2012. 9) 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국방부가 F-35 도입을 내정한 상태에서 계약을 서두르다 보니 불리한 FMS 방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대외군사판매와 상업구매 방식 비교>

| 대외군사판매(FMS) | 조건 | 상업구매(DCS) |
|-----------------|-----------|----------------------|
| 정부 대 정부 | 계약당사자 | 정부 대 업체 |
| 상한가 없는 개산계약 | 계약방법 | 확정 계약 |
| 한국 정부 납부 | 이행보증금 | 외국 정부·업체 납부 |
| 부과 불가능 | 지체상금 | 부과 가능 |
| 없음 | 선급환급 보증금 | 있음 |
| 추진 곤란 | 절충교역 | 가능(협상으로 범위결정) |
| 구매국 불이익 감수 | 계약위반 발생시 | 판매자 계약 위반시 고정된 벌금 부여 |
|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 미충족 | 구매국 요구 수용 |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 충족 |

<미국 대외무기판매제도(FMS)의 구매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문형일2012. 2. 25p >

- FMS 방식은 상한가 없는 개산 계약으로 향후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지 알 수 없다. 국방부는 2018년 이후에는 F-35가 대량생산되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공동 생산국들은 F-35 성능 결함과 비용 상승을 이유로 구입 수량을 줄이거나 구입 시기를 연기하고 있고, 개발 리스크 부담도 여전히 가중되고 있어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 또한 2000억 원에 달하는 대외군사관매(FMS) 행정비를 미국에 내야 하며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부과도 불가능하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기종 개발에 실패했을 때 선급금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 FMS 방식이라고 해서 한국처럼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도 FMS 방식으로 F-35를 도입하지만 전자전 장비를 비롯한 자국산 부품을 장착하는 등 사실상 공동생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⑥ 대일 종속 가능성 우려

- 국방부는 이번 F-35 도입협상을 통해 F-35의 조립과 부품 생산, 창정비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은 F-35의 부품 생산과 아시아 지역 창정비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획득했다. F-35를 정비할 능력과 권한이 없는 한국은 일본이 생산하는 부품을 사용하거나 일본 기업에게 창정비를 맡겨야 한다. 그렇게 되면 F-35 운영을 일본에게 의존해야 하며 부품 수입과 창정비에 소요되는 운영유지비를 일본과 일본기업에게 지불해야 한다. 국방부는 일본에서 창정비를 받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F-15K 처럼 미국 부품을 사용하고 미국에서 창정비를 받는다면 이로부터 오는 많은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또한 한국군의 F-35가 일본에서 창정비를 받게 되면 우리 공군 전투기의 운항기록 등 작전 결과에 대한 데이터도 고스란히 일본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⑦ 핵심 항공기술 획득과 국내 항공산업 진흥에 역행

- 한국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미국 완제품 수입을 통해 전투기를 확보해 왔다. 국내면허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라도 미국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이로 인해 첨단 기술획득에 실패해 국내 항공산업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 이번 F-35 도입 협상도 ‘을’의 처지에 몰린 결과 스텔스, 엔진, 레이더 등 핵심기술 이전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방부의 스텔스 기능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으로 수의계약과 FMS 방식의 불리한 협상을 자초함으로써 기술이전과 절충교역 획득에 실패한 것이다. 군 스스로도 F-X 1차(2002년), 2차(2006년) 사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⑧ 해외구매 추세에 역행

<해외 F-35 구매 현황>

| | 기존 | 현재 | 변동 |
|------|----------|----------|----------------|
| 미국 | 3200대 | 2400대 예상 | -800대, 5년 연기 |
| 이탈리아 | 131대 | 90대 | -41대 |
| 노르웨이 | 2014년 구매 | 2016년 구매 | 2년 연기 |
| 네덜란드 | 2015년 구매 | 2019년 구매 | 4년 연기, 구매대수 축소 |
| 캐나다 | 80대 | 65대 | 구매 결정 보류 |
| 영국 | 138대 | 48대 | -90대(미정) |
| 덴마크 | | | 다른 기종 고려 |

- 미국을 비롯한 공동개발국인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등의 국회는 성능결함과 비용 상승을 이유로 F-35 도입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 나라들은 F-35 도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구매 수량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하고 있다.

⑨ 총사업비의 인상이 우려되고 불공정한 협상 체결로 인해 예산낭비 소지가 큰 F-35 도입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FMS 방식을 통해 도입되는 F-35는 상한가 없는 개산 계약으로 인해

향후 총사업비의 증가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과 FMS 방식 등 불리한 협상 조건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이에 국가재정법 38조 4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거나 50조 3항에 의거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국회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F-35는 7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도입 비용에 비해 우리 국방에도, 항공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전형적인 비효용 낭비예산이다. 따라서 관련 예산 3,500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78) 전투예비탄약중 155mm 전단탄 (1433-301)

1. 개요

(단위 : 백만원)

| 소관 | 사업 성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15년 예산안(B) | 삭감 요구액 |
|-----|-------|------|------|-----------------|-----------|
| 방사청 | 신규 | | | 1,835 | 1,835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대북 전단을 보다 정확하고 멀리 북측 지역에 투하할 수 있는 K-9 자주 포용 신형 전단탄(傳單彈) 확보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 대북 전단 살포는 북의 내란을 선동하는 심리전의 일환이자 전쟁의 한 형태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불러온다. 2014년 10월 남·북의 무력대응은 대북 전단 살포가 민족 생존을 불모로 한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었다.

②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합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다.

- 지난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의 하나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군은 2000년 4월 이후 중단되었던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여 2011~2012년 사이 대량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 때부터 북한의 전면 남침이나 국지도발

에 대비한 대북 심리전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한국군은 K-9 자주포용 신형 전단탄(傳單彈)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는 “언론·뼈라 및 그 밖의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않”기로 한 남북 기본합의서와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 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하기로 한 2004년 6월의 2차 남북 장성급 합의는 물론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기로 한 2014년 2월 1차 고위급 회담 합의 사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고 남북의 합의를 위배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탄 도입 예산 1,83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정부에게 5.24 조치의 해제를 촉구해야 한다.

(40) 광개토-III Batch-II (1231-309)

1. 개요

(단위 : 백만 원)

| 소관 | 사업 성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15년 예산안(B) | 삭감 요구액 |
|-----|-------|-----------|----------|-----------------|-----------|
| 방사청 | 신규 | 4,073,086 | '14~'28년 | 47,068 | 47,068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북 전면전 및 주변국과 해양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광개토-III 보다 성능이 향상된 구축함을 국내 건조로 확보하는 사업
- ②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탄도탄 탐지 및 추적 능력 및 대잠작전 능력을 크게 확충하고, 전시 구역대공방어, 수상함 및 지상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최첨단 전투체계, 탐지센서 및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여 기동전단의 핵심전력으로 운용될 예정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사업 목적의 허구성

•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북한의 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허구적 주장이다.

- 남한은 미사일 전력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북한은 노동미사일 200기를 포함하여 약 800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한은 현무

600기, ATACMS 200기, 나이키 허큘러스 300기 등 탄도미사일만 1100기가 넘으며, 사거리가 500km~1,500km에 이르는 순항미사일 현무 3A, 현무 3B, 현무 3C도 2008년부터 양산해 전력화하고 있다.

- 북한의 전술핵은 군사적 효용성이 낮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해도 북한이 (남한을) 이길 수 없다”고 밝힌 것처럼 북한이 전술핵을 10여 개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남한보다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 특히 이지스함의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사업 목적은 허구다. 기존 이지스함과 새로 도입할 이지스함에 SM-6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장착하더라도 방어중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 지형 상 종말단계 요격은 거의 불가능하다. SM-6 제원은 요격 고도가 30Km 내외, 속도가 마하 3.5 정도로 극히 일부 해안 지역 방어는 가능할지 모르나 내륙 방어는 불가능하다. SM-3는 외대기권 요격용으로 대부분 내대기권을 비행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은 아니다.

•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남한은 해군력에서 북한에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 해군력은 총톤수에서 19만톤(남한) : 10만톤(북한)으로 거의 두 배 정도의 절대 우위에 있다. 따라서 북한과 전면전에 들어가더라도 현재의 전력만으로도 얼마든지 해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북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개토-III Batch-II 사업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 **주변국과 해양 분쟁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위험성** : 독도와 이어도 등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광개토-III Batch-II 사업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주장은 군비경쟁과 주변국과의 적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 독도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일본이 이를 군사력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한일 간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일본 내 현 정세나 국제정세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다.
- 중국, 일본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이어도는 수심 4.6m에 위치하여 해양법상 ‘수중 암초’로 공해다. 만일 한·중·일이 이어도에서 관할권 다툼

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이지스함 등 대형 함정을 동원해 군사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주변국과 국지전,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설령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군이 아니라 해경이 나서야 할 문제다.

- 그런데도 주변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수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대형 함정을 도입한다는 것은 중일과 무한 군비경쟁을 벌이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경제력은 GDP가 한국은 1조 3,045억달러, 중국은 9조 2,403달러, 일본은 4조 9,015억달러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7배, 3.7배의 경제력을 갖고 있으며, 국방비는 한국이 339억3,700만달러, 중국 1,884억6,000만달러, 일본 486억4,000만달러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5.5배와 1.4배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 (2013년 기준)
- 만약 한국이 중일과 무한 군비경쟁을 벌이게 되면 국가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해양수송로 위협 대비 대형 함정 도입 주장도 허구** : 국방부가 중국 등 주변 연안국들에 의한 해양수송로 위협에 대비해 대형 함정을 추가 도입하겠다는 것도 허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중국이 자국 연안의 해양수송로를 폐쇄할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중국이 해양수송로를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대중 절대 열세의 우리 해군력으로 이를 돌파할 수 없다. 이는 국방부 주장대로 2030년께 전략기동함대를 보유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남중국해나 말라카 해협 등 동남아 지역은 우리 함정이 작전하기에는 병참선이 길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 만약 국가가 아닌 테러단체나 해적들이 해상수송로를 위협할 경우에는 이지스함 등 대형 함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인근 국가들과 협력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우회 항로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② 이지스 광개토-Ⅲ 사업의 숨은 목적?

• **미 MD 편입과 한미일 삼각 MD 구축을 통한 대중 포위망 구축 우려**

- 대북 작전에도,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이나 소위 해상수송로 보호 등을

위한 원양작전에도 쓸모없는 대형 이지스함을 도입하려는 것은 결국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여 일본이나 미국, 미군기지 등을 향해 날아가는 북중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는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번 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당국은 미국의 MD 자산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을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015년까지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는 한국군 MD 자산이 미국 MD 체계의 하위 체계로 편재되어 한국의 미국 MD 참여가 공식화되고, 나아가 종말 상층 요격이나 외대기권 요격을 위한 THAAD나 SM-3 도입도 요구받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일의 대중 포위망에 한국이 끌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해상수송로 보호 명분하에 미국의 해상 패권을 뒷받침해 주려는 의도 :**

- 해상수송로는 “석유나 군사, 무역물자가 통과하며, 침략 경로로도 사용된다.”는 캐스퍼 와인버거 전 미 국방장관 주장에서 보듯이 해양수송로는 미국의 해양 패권을 지키기 위한 보급로다.
- 한국이 불요불급한 순양함급 대형 함정을 도입하려는 것은 미국의 해양 패권 행사를 뒷받침해 주고, 이에 편승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전형적인 해군의 몸짓 불리기 :** 대북 작전,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해상수송로 보호 등의 허구적인 명분을 들어 대형 함정을 도입하려는 것은 해군의 전형적인 몸짓 불리기다.

③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미시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로 사업을 중단시켜 예산 낭비를 막았어야 하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 타당성 재검증이 2014년 10~11월에 예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국방부 산하기관인 KIDA가 타당성 재검증을 하게 되어 있어 타당성 검증 결과가 국방부와 해군의 입맛대로 나오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에 국회는 국가재정법 38조 4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50조 3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결의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공신력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광개토-Ⅲ Batch-Ⅱ 사업 목적은 허구적이고, 사업 타당성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가 그 동안 부정해 왔던 한국의 미 MD 가입이나 대중 포위 전략에 동원될 위험성이 큰 사업이다. 따라서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은 도리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큰 사업이다. 국가안보를 명분 삼아 국가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사업에 총사업비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에 2015년 예산 470억 6,800만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5131-302)

1. 개요

(단위 : 백만원, %)

| 소관 | 사업성격 | 2014년예산 (A) | 2015년예산안 (B) | 증감(B-A) | 삭감요구액 |
|-----|------|----------------|-----------------|---------|---------|
| 국방부 | 계속 | 297,302 | 337,334 | 40,032 | 337,334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일부시설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군사시설개선비 항목의 배정이 한미합의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예산요구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2015년도 군사시설개선비가 3,373억원으로 정해진 과정을 보면 한미간 합의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뤄졌다.
- 국방부는 2015년도 군사시설개선비 산출 근거에 대해서 “2015년 방위비분담금 한미합의액 총액 9320억원 중 2013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분야 배정비율(44.3%)에 따라 산정(4,129억원) 후 과거 집행실적 고려 756억원 감액 편성(3,373억원)”(국방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1161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표1> 2015년도 방위비분담금 9,320억원의 항목별 배정(단위:억원)

| 항목 | 계 | 인건비 | 군사시설개선 | 군수지원 |
|---------|--------------------|---------------------|-------------------------------|-------------------------------|
| 배정 및 근거 | 9231(협정액 9,320) | 3490(미국이 통보한 액수) | 4129(전년도 배정비율 44.3% 적용) | 1612(전년도 배정비율 17.3% 적용) |
| 감액 및 근거 | -872(협정액 대비감액) | 0 | -756(과거 집행실적고려) | -28(과거집행실적 고려) |
| 예산(안) | 8448 | 3490 | 3373 | 1585 |

- 한미가 합의한 방위비분담액 항목별 배정 절차는 주한미군사가 ‘집행 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최종배정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사는 인건비 배정액에 대해서만 2014년 8월에 한국측에 통보하였을 뿐이다.
- 우리 정부는 9차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2014.1.23) “방위비분담금의 항목별 배정액 추산단계(1년전)에서부터 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한미간 공동으로 철저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는지에 대한 우리측의 확인·검토·평가 가능”(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결과”, 2014.1.23, 2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하지만 방위비분담금 항목배정을 위한 한미간 논의는 커녕 미국이 인건비만 일방적으로 액수를 통고하고 군사시설개선비나 군수지원비는 배정액조차도 알려오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이른바 ‘제도개선’은 사실상 허언이 된 것이다.
- 그리고 이런 미국의 인건비 배정액의 일방적 통고나 군사시설개선비 및 군수지원비의 배정에 대한 미국의 책임 미이행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이나 ‘한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에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 이처럼 한미합의에 의거하여 정하여지지 않고 우리 정부가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임의로 정한 군사시설개선비는 예산요구안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진 예산은 집행 또한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임은 물론 미국과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이견을 제시할 여지를 남겨놓게 되는 것이다.

- 따라서 국회는 군사시설개선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요구안으로서의 적법성을 가지고 제출될 때 비로소 심의해야 옳다.

② 2015년도 군사시설개선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요구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이행약정’이나 ‘군사건설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제도개선 교환각서’를 보면 군사시설개선사업(한국지원건설계획)은 주한미군사가 집행연도의 전전년도 11월30일까지 건설사업목록의 초안 및 초기사업설계 목록, 그리고 간략한 사업설명서를 우리 국방부에 제출하고, 최종건설사업 목록의 초안은 집행연도의 전년도 8월31일까지 우리 국방부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 그런데 국방부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Ⅱ-1』(161쪽)을 보면 주한미군사가 군사건설계획을 한국측에 보냈다는 설명이 없고 ‘2014년 신규사업 미확정’으로 되어있다. 즉 2014년도 사업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년도 건설사업계획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것이 불문가지다. 2013년도 군사시설개선비를 보면 우리 국방부가 감액편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69.1%에 불과하였다. 예산 4303억원 중 2972억원만 집행되고 1,330억원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었다. 이에 비추어보면 2015년도 군사시설개선 예산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고 있는 지금에조차도 2015년도 군사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산 자체가 명확한 사업계획에 의거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었다는 것, 따라서 예산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예산이 설사 국회에서 의결된다 해도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 우리 정부는 9차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측이 사업집행 직전(전년도 11월)에 건설사업 목록만을 제출하던 현행 시스템을 고쳐서, 사업목록안을 사업설명서와 함께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제출하며 이

를 기초로 1년간에 걸쳐 새로이 격상되는 ‘한미협조단’협의 등 단계적·실질적 사전협의를 통해 구체 사업계획을 사실상 공동수립”하게 됨으로써 “한미간 협의 조정결과에 기초한 건설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이월액 등 집행부진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이런 의미부여는 1년도 채 못가 빈말에 불과함이 드러나고 말았다.

- 2015년도 군사시설개선비는 군사건설사업계획에 관한 한미간 합의에 의거하여 제출된 예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산요구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③ 방위비분담금의 과도한 이·불용 개선에 관한 국회 예결위의 결산시정요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국회는 그동안 방위비분담금이 매년 과도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여 왔다. 2012회계연도 국회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는 그 한 예다.
- 이런 요구에 답해 국방부는 9차 방위비분담 협상 때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분담금 배정 초기 단계부터 한미간 사전 조율 강화’와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사전 협의체제 구축’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합의도 앞서 본 것처럼 작동되지 않고 있고 2015년도에도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미 예산편성 단계에서 협정액 9320억원보다 872억원이나 적은 8448억원으로 감액편성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48억원도 또 수십 %의 집행잔액을 남길 것은 불문가지다.
- 대규모 미집행 발생잔액이 특히 군사시설개선비에서 예상되는만큼 국회는 이른바 ‘제도개선’이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대규모 미집행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 이것이 규명되어 어느정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군사시설개선비는 보류되어야 한다.

④ 군사시설개선비 현물지원 비율 88%가 사실상 포기된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전까지는 군사시설개선비의 투명한 사용과 불법적인 전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군사시설개선비를 88% 현물로 지급하고 12% 범위에서 설계 및 시공감리비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 그러나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는 이런 88% 현물지급 규정 자체가 삭제되었다. 대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을 보면 “설계 및 시공감리는 총사업비의 평균 12%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제외한 군사건설비는 원칙적으로 현물로 지원한다”라고 되어있다. 이 말대로 하면 현물지급 88%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 이행약정은 바로 이어서 “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의 제9항에 따라 특정 군사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군사시설개선비는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제3항에 의하면 현물지급의 주체(즉 건설계약체결과 시공주체)가 한국으로 되어있다. 이는 그간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변함없이 쪽 지켜져 온 원칙이었다. 그런데 위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이행약정’을 보면 ‘특정군사건설사업’의 경우 계약체결과 시공의 주체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현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이 경우에는 설계 및 감리비용 12% 이외에도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의 현물지급 비율은 88%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즉 한국은 현물지급 비율이 88%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이를 허용하게 된 것이며 미국측도 건설계약체결 및 시공 주체가 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 미국이 건설계약 및 시공 주체가 되고 또 현물지급비율 88%선이 무너지게 됨으로써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보다 한국의 이익이 후퇴된 것이

며 현물지급비율 88%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였던 군사건설사업의 투명성과 불법전용의 방지도 함께 퇴색되게 되었다.

- 미국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건설계약과 시공은 우리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미국은 더욱 마음 놓고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기지 이전 사업들에 전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건설계약 및 시공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통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건설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에서는 건설사업의 계약체결과 시공주체는 한국이다. 따라서 특정군사건설 사업의 경우 미국도 계약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이행약정은 교환각서를 위배한 것이다. 미국도 계약체결과 시공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이행약정의 규정은 교환각서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며 불필요한 마찰이나 혼란이 없도록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한다.

| | |
|---------------------------------|--|
|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제3항 |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이행약정 |
| 대한민국은……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사업을 시행한다 | “특정 군사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

- 미국이 직접 계약 및 시공주체가 되는 사업이라면 비밀을 요하고 많은 돈이 드는 C4I구축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진성준 의원에 대한 대면 보고 때(진성준 의원, <방위비분담금, 국회통제 강화방안>, 2013. 10, 22쪽), 미측이 불법적으로 축적해 온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미집행액은 “LPP사업, 특수정보시설, 설계비, 기타 건설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미국이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때까지와 달리 자신이 직접 계약 및 시공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은 특수정보시설(C4I시설 등)의 보안을 우려하기 때문일 수 있다.
- C4I비용은 미군기지이전 협상 초기(2003년)에 한국 부담 추정액이 202억원으로 제시되었다가 2008년에는 20배나 폭증한 약 4000억원(2억

7800만 달러)이었고, 미국 부담분은 3억7400만 달러로 추산된다.

- 시퀘스터에 따라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미측 입장에서는 4억 달러에 가까운 주한미군 C4I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미측이 부담해야 할 C4I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5조 3항에는 C4I 이전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제공, 기존 장비 이전, 900만불 이내의 장비 교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C4I의 한미 공동 성능향상 및 개발계획은 용산기지이전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주한미군사를 위한 C4I 성능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자금은 합중국이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따른 우리측 부담분 외에 미측의 C4I비용까지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한다면 이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⑤ 축적된 군사시설비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한 뒤 군사시설개선비 예산이 심의되어야 한다.

- 한미당국은 군사시설개선비 축적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폭로된 2007년부터 시종일관 이 사실을 부인해 왔다. 평통사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2006년과 2007년의 이자소득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끈질긴 추적과 요구에 의해 한미당국은 2013년에 이자소득 발생 사실을 사실상 공식으로 인정하였다.
- 한미당국이 군사시설개선비 축적금에서 이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공식 인정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군사시설개선비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군사적 목적 외의 사적 영업을 금지한 한미소과에도 위배된다.
- 우리 정부는 미군주둔비 축적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CB(커

뮤니티 뱅크)의 이자수익이 주한미군사 또는 미 국방부에 전혀 이전된 바 없음을 공식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관계 당국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자소득 발생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

- 우리 정부가 ‘후속 조치’ 검토를 밝힌만큼 그 결과를 국회는 당연히 보고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자수익은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것은 한미간 조약을 어긴 불법이므로 우리 국고에 환수되어야 한다.
- 군사시설개선비가 현물로 제공된다고는 하나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는 한국의 군사건설현물지급 비율 88% 선이 사실상 포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현금이 군사시설개선비항목에서 미국에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개선비의 축적이 늘어나고 그와 함께 이자소득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군사시설건설비 및 방위비분담 예산 심사 때는 이자소득의 원천적 방지와 기존 이자소득의 국고환수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때까지 군사건설비 예산지출은 중단되어야 한다.

4. 2015년도 군사시설건설비 예산 3,373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 2015년도 군사시설개선비 예산요구안을 검토해 보면 군사건설사업의 투명성이나 대규모 이월 및 불용 발생, 군사시설개선비의 불법 전용 등의 문제들이 어느 하나 개선되지 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건설 현물지급비율 88%선이 무너지고 미국이 직접 주체가 되어 건설계약체결과 시공도 할 수 있게 되는 등 오히려 집행의 불투명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미국이 군사시설개선비를 자신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전용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
- 군사시설개선비 그리고 방위비분담금이 터무니없이 낭비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완전히 무시되며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수립 및 집행의 원칙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군사시설개선비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2015년도 군사건설비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지휘통제통신사업(국군사이버사령부 영구청사 건설)

1. 개요

① 사이버사령부 영구청사건설사업 2015년도 예산

(단위 : 억원)

| 소관 | 사업 | 2014년 예산(A) | 2015년 예산안(B) | 증감(B-A) | 삭감 요구액 |
|-------|----|----------------|-----------------|---------|-----------|
| 방위사업청 | 계속 | 8.9 | 41.2 | 32.3 | 41.2 |

2. 사업 목적

2010년에 완공된 사이버사령부 임시시설 대신 영구청사를 짓는 사업임.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이 “2010~2016년까지 785.25억원을 투자하여 **국방 사이버 안전관리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이버사령부를 구축하는 사업**”(방위사업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43쪽)이라고 말하고 있음.

3. 방위사업청 주장의 문제점

① 영구청사 건설의 목적이 실제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 방위사업청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사용계획안 설명자료』를 보면 사이버사령부 영구청사 건설 사업은 그 목적이 ‘국방사이버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있다.
- 그런데 국방사이버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은 실제 사이버사령부의 활동과 괴리가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사령부는 국방사이버안전관리와는 무관한 307심리전단을 내부 기구로 두고 있고 여

기서 국내정치관여 활동을 부대창설 당시부터 해왔기 때문이다.

- 또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은 ‘국군사이버사령부령’(대통령령, 2011.7.1)에 규정된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와도 괴리가 있다. 이 국군사이버사령부령에 의하면 사이버전의 기획 및 계획수립 나아가 사이버전의 시행 등이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로 되어있다. 이런 임무는 사이버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사이버전은 단순히 해킹을 방지하고 복구하는 보안 차원을 넘어 적의 사이버를 선제공격하여 교란하고 마비시키고 파괴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서 전쟁수행능력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하지만 영구청사 건설의 사업목적은 심리전이나 사이버전과는 무관하거나 거리가 있는 ‘국방사이버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되어있다.
- 따라서 사이버사령부의 기능이나 임무가 ‘국방사이버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재정립된 것인지, 그렇게 되었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재정립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고 심리전이나 사이버전에 대해서는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이유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사업목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대신 비공개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면서 그에 맞추어 영구청사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 만약 국내정치활동을 표적으로 하는 심리전이 숨겨진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나 주변국 등에 대한 선제공격적인 사이버전이 숨겨진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또한 외교안보정책으로나 국방정책, 군사전략 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영구청사 건설의 실제 목적이 무엇인가가 명확히 규명, 확인되어야 하며 그 때까지 이 사업은 보류되어야 한다.

②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타당성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소요결정(2009년) 당시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에 미해당(총사업비 859.35억원)되어 미실시”(방위사업청, 『2015년도 예산사업설명서』, 45쪽)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사이버사령부의 영구청사건설 사업은 그 핵심이 사이버전을 수

행하기 위한 지휘통제통신(C4I)을 청사 내부에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C4I를 어떤 규모와 기능, 수준으로 구축할 것인가 또 거기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검토해야 할 정책적, 전략적 사항들이 산재해 있다. 이른바 ‘사이버전’은 실제 병력이 동원되는 전쟁과 달리 사이버상에 벌어지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양상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사이버전의 수행방식, 사이버전의 허용한계, 사이버전의 문민통제, 사이버전이 초래할 결과 예측, 사이버전의 상대, 사이버전에 소요되는 경비, 공격적 사이버전의 우리 헌법 위반여부와 국제법과의 관계 등 중대한 문제들이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 따라서 타당성 조사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된 것은 그것이 설사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무책임한 것이고 방위사업청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관련부처 수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36조(타당성 재검증 대상사업) 6항은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게 되어있다. 이에 기재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은 이 사업을 재검증하는 결정을 해야한다.

③ 타당성 재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 국가재정법 38조와 시행령 13조(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다. 사이버사령부 영구청사건설 사업은 그 총사업비가 785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면제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전이라는 초유의 전쟁을 수행하고 심리작전까지 수행하는 부대로 창설된 것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마땅했다. 만약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어 심리전을 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평가를 미리 했었다면 사이버사령부가 2010년 창설 때부터 국내정치관여를 해오고 급기야는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여 헌법을 유린하는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가 사전 예방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실수이고 기획재정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 또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국가재정법 제38조) 하기 때문에 설사 국방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였다 하더라도 국회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했어야 마땅하였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22조(타당성 재조사)를 보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는만큼 지금이라도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
- 또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의 주요임무가 바로 국방사이버안전이다. 그런데 군내에서는 사이버사령부 외에도 기무사령부, 각 군의 군단급·작전사급 이상 부대에서 운용하는 컴퓨터 긴급보안 대응팀(CERT) 등이 사이버안전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군 바깥으로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국가정보원 산하), 사이버테러대응센터(경찰청 산하) 등이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임무의 중복이나 예산 낭비 등의 요소가 없는지 또 보다 효과적인 국방사이버안전은 무엇인지, 민간기관과의 협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

④ 국방위 부대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사령부의 영구청사건설에 앞서 사이버사령부의 부대편성 조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 2014년 예산 심사 때 국방위는 “사이버사령부 사업은 부대편성이 조정·확정되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부대의견 이행계획을 접수하였으며, 사이버사에서는 2014년 전반기 중 부대편성 조정계획을 국방부로 보고하고 9월 말에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부대편성을 조정한다는 계획”(방위사업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47쪽)이라고 밝히고 있다.
- 우선 사이버사령부의 부대편성 조정·확정이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이 절차가 안 끝났다면 당연히 사업은 보류되어야 한다. 만약 이 절차가 끝났다면 부대편성의 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307 심리전단은 국정원의 예산통제를 받는, 정치적 중립성을 원천적으로 지키기 어렵다. 또 이 심리전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령에 위배되는 불법기구다. 이 심리전단은 사이버사령부 부대편성에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307 심리전단이 사이버사령부 부대편성 조정 뒤에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면 국회는 영구청사 건설사업 예산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4.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 41.2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 방위사업청 소관 영구청사 건설은 타당성 재조사나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
- 2015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다.

국군사이버사령부(국방행정지원)

1. 개요

① 사이버사령부 운영 2015년도 예산

(단위 : 억원)

| 소관 | 사업 | 2014년 예산(A) | 2015년 예산안(B) | 증감(B-A) | 삭감요 구액 |
|-----|----|----------------|-----------------|---------|-----------|
| 국방부 | 계속 | 261.4 | 261.5 | 0.1 | 104.9 |

2. 사업 목적

(국방부 소관 사업) 사이버사령부 부대운영

3. 사이버사령부 부대운영사업비의 문제점

①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활동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 사이버사의 2012년 대선개입활동은 과거 정치군인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민주헌정질서의 파괴와 똑같은 성격의 불법행위다. 이에 대한 국방조사본부의 수사결과가 2014년 8월19일 발표되었지만 이것으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된 것도, 진실이 밝혀진 것도 아니다.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조직적, 인적 책임 묻기와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때까지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운영을 비롯한 부대운영비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 심리전단 요원의 정치댓글행위를 단순한 개인적 일탈행위로 치부해버리고 관련자들을 입건하는데 그친 것은 명백히 봐주기식 부실축소수사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최종수사결과에 의하면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

년 1월부터 2013년 10월15일까지 사이버사요원들이 게시한 정치관여글은 5만여건이며 이중 특정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위법한 댓글이 무려 7,100여건에 이른다. 이처럼 야당이나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고 중상하는 글이 몇 년간이나 대량으로 또 선거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속됐는데도 이를 심리전단요원들의 개인일탈행위라고 한다면 이를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사이버사령관이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는 안 하였다’거나 ‘국정원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650여개와의 (심리전단요원 아이디의 리트윗) 교류가 1,800여회에 이른다’고 밝히면서도 “단지 추정일 뿐이지 국정원 요원 아이디로 단정할 수 없다”며 “온라인 댓글 활동이 국정원과 무관하다”라고 한 국방조사본부의 수사발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실축소수사다.
-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이 심리전단요원들의 정치댓글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것은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다. 또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에는 국정원이 조정통제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이 돈이 심리전단요원들의 정치댓글활동에 지원되었다는 객관사실은 국정원과의 연계가 없다는 수사결과의 신빙성을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든다.

② 사이버사령부의 임무 및 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는 ‘국군사이버사령부령’(대통령령, 2011.7.1)에 의하면 국방 사이버전의 기획 및 계획수립, 시행 등 사이버전과 관련된 것들이다.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에는 심리전은 들어있지 않다.
- 사이버전과 심리전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사이버전이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가 유통되는 가상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사이버 공격수단을 사용하여 적의 정보체계를 교란, 거부, 통제, 파괴하는 등의 공격과 이를 방어하는 활동”(합참,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이다. 반면 심리전은 “국가정책의 효과적인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측이 아닌 기타 모든 국가 및 집단의 견해, 감정, 태도, 행동을 아측에 유리하게 유도하는 선전 및 기타 모든 활동의 계획적인 사용”(위 합참자료)을 일컫는다.
- 사이버사령부에 사이버전과 무관한 심리전단을 두는 것은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의 위반이다. 사이버사령부가 원래 법에 규정된 임무와 다르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를 설치 목적에 맞게 완전히 재편해야 하며 사이버사령부의 규모나 지휘관계, 운영방식 등도 전면 재검토되어

야 한다.

③ 사이버사령부의 국내정치활동 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 사이버사령부가 창설 당시부터 심리전단과 사이버전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것은 처음부터 국내정치활동까지를 목표로 하여 창설되었음을 말해준다.
- 사이버사령부 예산에 국정원이 조정통제하는 예산이 매년 수십억원씩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런 의도를 방증해준다.
- 국방조사본부의 최종수사발표를 보면 사이버사령부 창설 때부터 사이버요원들이 정치관여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또한 사이버사령부의 주요목적의 하나가 국내정치개입임을 말해준다.
- “2011년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 소속장교와 요원들의 공적조서를 보면 ‘G-20 회의 기간 중 인터넷상 정부 비방글 확산 저지노력’ 등 군의 활동과 무관한 여론조작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거나 “국정원,경찰청, 정보사 등과 체계적인 공조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보인다”는 YTN보도(2013.10.27)도 사이버사령부가 정권안보를 위하여 활동하는 조직임을 말해준다.
- 사이버사령부의 국내정치개입 행위가 확인되고 있는만큼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체계, 지휘관계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통해서 국내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사이버심리작전을 합참 통제 아래 둔다는 국방부의 대안은 미봉책이다

-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유지 보장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합참 통제 아래 사이버심리작전 수행 '적법성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전 기획, 계획, 시행 및 연구 개발에 충실하도록 조직과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 중"(한국일보, 2014.3.19)이라고 밝혔다.
- 사이버전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전과는 전혀 다른 영역인 심리전단을 폐지해야 맞는데 심리전단을 그대로 두면서 사이버전임무에 충실히 하겠하다고 하니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심리전단의 국내정치개입을 조금이라도 줄일 의사가 있다면 우선 예산에 대한 국정원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해야하는데 이런 조치가 빠져있다. 2015년 사이

버사령부 운영예산261억원에는 국정원이 편성한 4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점에서도 국방부의 조치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⑤ 방어적 사이버전을 위한 기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상대가 먼저 사이버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사이버공격을 행하는 공격적 사이버전은 침략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이나 국제법의 정신에 반한다. 사이버전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방사이버에 대해 가해져 오는 공격을 방어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현 사이버사령부는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그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부대에 공격적 사이버전 임무까지를 맡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사이버안전문제 대응은 사이버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각군의 군단급·작전사급 이상 부대에서 운용하는 컴퓨터 긴급보안 대응팀(CERT), 국가사이버안전센터(국가정보원 산하), 사이버테러대응센터(경찰청 산하)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 국방사이버해킹방지(사이버안전) 임무를 꼭 군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재검토해야 한다. 상대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민간기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가 있다.

⑥ 사이버전을 한미동맹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해서는 안 된다

- 2011년 10월의 4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하고 “사이버안보문제에 대한 양자간 전략적 정책대화 설립을 환영하였다”.
-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사이버공격국이며 그 전략 또한 방어에서 선제공격으로 바뀌고 있다. 스노든은 미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를 상대로 6만1000건 이상의 해킹을 했으며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과 홍콩의 수백 개 목표물을 컴퓨터 해킹해 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미 통신사 버**

라이즌의 연례 보안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사이버 공격의 20%가 북미권에서 시작됐으며 이는 중국이 속한 동아시아(2%)보다 월등히 많다. 오바마대통령은 2012년 10월 ‘대통령 정책지시 20’을 통해 ‘공격적 사이버 효과 작전’을 추진토록 명령하였다고 한다. 이 문서에 의하면 이란과 북한 등에 맞서 ‘선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해 오바마의 사이버 전략이 ‘방어’에서 ‘선제공격’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경향신문 2013.6.14)

- 만약 사이버전이 한미동맹의 임무로까지 포함되게 되면 이는 사이버상에서의 대미 군사종속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은 미국의 대북 및 대중국의 사이버공격전략에 발을 맞춰야 한다. 그에 따라 국군사이버사령부도 미국의 대북 및 대중 사이버전 요구에 맞춰 나가야 될 것이다.
- 사이버전에 대한 미국의 한미동맹 구축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사이버사령부의 부대 규모와 임무의 범위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문민통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사이버사령부의 대북 및 대중국 등의 사이버작전에 대한 정책적 전략적 통제도 어려워지고 그 결과 남북관계나 대중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국가적·국민적 요구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교전 수칙을 만들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 손실이 심각할 경우 사이버 공격을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자칫 통제를 벗어난 사이버사령부의 행동이 외교적 대립을 넘어 남북간 또는 국가간 사이버전을 유발하고 급기야는 이것이 무력을 촉발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는 사태가 없도록 지금부터 국방사이버안전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현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와 역할, 존재 방식 등에 대한 재검토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4. 건의 및 요구사항

사이버사령부 운영 예산 중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104.9억원을 삭감해야 한다

① 삭감 필요성

- 사이버사의 정치댓글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민주헌정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재조사와 그에 바탕한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재편 방향이 나올 때까지

- 국방부소관의 사이버사령부의 운영비 등의 예산은 보류되어야 한다.
- 사이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현재의 조직구조 및 활동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와 조직구조, 지휘관계, 운영방식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심리전단 운영은 사이버사령부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는 중지되어야 한다.
 -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인 사이버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전담부대까지 두면서 공격적 사이버전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나아가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침략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 또 선제무력공격을 금지한 유엔헌장 등에 비춰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② 삭감요구액

- 국방부소관의 사이버사령부 부대운영비 261억원 중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운영비 104.9억원을 삭감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삭감대상은 국방정보화 41.6억원, 군수지원 및 협력 3.6억원, 군인사 및 훈련 2.6억원,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5.4억원, 국방행정지원 54억원(이속에는 국정원이 편성한 40억원이 포함돼 있음) 합쳐서 104.9억원이다.

국방행정지원(특수활동비와 직무수행비)

1. 개요

① 국방행정지원 2015년도 예산

(단위 : 억원)

| 소관 | 사업성격 | 2014년 예산(A) | 2015년 예산안(B) | 증감(B-A) | 삭감요구 액 |
|-----|------|----------------|-----------------|---------|-----------|
| 국방부 | 계속 | 8,911 | 9,682 | 771 | 2,190 |

② 국방행정지원 예산 중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예산액

- 국방부의 2015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1,793억원이다. 이 가운데 1,787억원이 국정원이 통제하는 예산이며 나머지 6억원이 국방부가 편성한 예산이다. 국정원이 통제하는 2015년 특수활동비에는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지원예산 4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 업무추진비는 2015년도 예산이 516억원이다.
- 직무수행비는 2015년도 예산이 397억원이다. 직무수행비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비로 나뉘는데 직급보조비는 이 397억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건비(110)에 포함되어 있다.

2.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이유

① 특수활동비는 명목만 국방부 예산이지 사실은 국정원의 예산이다.

- 국방부의 특수활동비는 편성 주체만 국방부로 되어있지 사실은 국정원이 조정관리하는 국정원 예산이다. 2015년도 국방부의 특수활동비 1,793억원 중 국방부가 편성한 예산은 6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787

역원은 국정원이 관리하는 예산이다.

<표1> 최근연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단위 :억원)

| 비목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특수활동비 (230) | 전체 | 1597 | 1721 | 1778 | 1793 |
| | 국정원 통제 | 1567 | 1714 | 1771 | 1787 |
| 업무추진비 (240) | | 575.95 | 573.05 | 513.90 | 516 |
| 직무수행비 (250) | | 370.47 | 376.72 | 388.51 | 397 |
| 합계 | | 2543.14 | 2671.25 | 2680.80 | 2706 |

주: 1)직무수행비는 직급보조비(250-01)와 직책수행경비(250-02), 특정업무경비(250-03) 3개의 세목으로 구성된다. 직급보조비(250-01)는 비목별로는 직무수행비의 하나로 분류되지만 사업(프로그램)별로는 급여정책(1100)에 포함되어 있고 국방행정지원사업(프로그램)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 국방부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를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 사업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3조(직무)는 국정원 직무의 다섯 번째 항목으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국정원이 국방부의 특정 예산을 편성하고 또 조정·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국정원이 각부처에 자신이 관리통제하는 예산을 숨겨놓고 있는 것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의 예산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31조 등)을 어긴 것이다.
-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타부처의 예산을 국정원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타부처 임무와 역할의 고유성,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다.

② 특수활동비는 부당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 국정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중 상당부분을 지원하여 왔다. 국정원은 2012년에 사이버사령부 예산 17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2013년에는 253억원 예산 중 57억원을, 2014년에는 261억원 중 60억원을 사이버

사령부에 지원하였다. 이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의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정치댓글활동에 쓰였다.(한겨레 2013.11.21)

- 국방부 예산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이처럼 국정원이 군을 불법적으로 정권안보에 이용하는데 쓰이고 있다.

③ 특수활동비는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

- 국가재정법은 그 목적에 대해서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제1조)으로 규정하고 예산의 원칙으로서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서의 국민참여 제고 노력’ 등의 의무(제16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이)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산의 원칙(제56조)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이러한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예산의 원칙, 결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는 해당 기관별로 집행 총액만 책정할 뿐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 특수활동비는 그 동안 횡령이나 목적 외 사용 등 술한 문제점이 드러나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로 2011년 4월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참석자 45명에게 2백~3백만 원씩 나눠져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재직당시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2006년 말 국회의 요청으로 감사원이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특수활동비의 상당한 액수가 목적과 다르게 간담회 개최나 축·조의금, 격려금, 화환이나 기념품 구입 등 업무추진 용도로 쓰인 사실이 적발되었다.

④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난다

-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작성세부지침』(2014.4)을 보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되며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187쪽)해야한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 설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쓰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절차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목적에 지출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위에서 밝힌 특수활동비 규정도 이런 원칙을 전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 국방행정지원에 포함된, 국가정보원이 통제하는 특수활동비 가령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요원들이 사용한 예산은 사건수사나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 또 사이버사령부에 편성된 국정원 예산이 2015년도의 경우 40억원으로 사이버사령부 전체 예산 261억원의 15.3%나 차지한다. 이런 비중은 사이버사령부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것으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쓰도록 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에도 크게 어긋난다.

3. 직무수행비(직책수행비 및 특정업무비)의 삭감 근거

① 직책수행비(월정직책급)의 삭감 근거

- 직책수행비(250-02)는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안 작성세부지침』)를 말한다.
- 직책수행비는 월정급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영수증 첨부도 필요 없고 남아도 반납할 필요가 없는 돈으로 여겨진다. 직책수행비(월정직책급 또는 직책별 특정업무비)는 광의의 업무추진비(관공비)로 그 투명성과 낭비성, 불법적 사용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 국방부도 예외가 아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직책수행비를 부당하게 예산 편성 및 집행한 것에 대해 ‘주의요구’를 내린 바 있다. 직책수행비가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고 교육이나 훈련기관 입교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도 국방부가 이런 규정을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즉 국방부는 국방대학교로 1개월 이상 교육훈련 과견명령을 받은 대령급 이상 217명 장교에게 직책수행비로 매달 정액(준장 70만원, 대령 3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해 2008년부터 2011년 2월말까지 6억4천5백만원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직책수행비는 매월 월정급으로 지급되는데 그 지급범위나 지급형태가 월급 개념인지 아니면 공적 성격의 순수한 업무추진비인지 구분이 되지 않

고 있다.

- 또 장교 및 부사관들은 ‘직급보조비’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수당’(급여)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직책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는 중복되는 경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직급보조비가 비록 ‘수당’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계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어 생계비보조 성격보다는 판공비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직급보조비(250-01)와 직책수행경비(250-02)는 중복된다는 점에서 직책수행경비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
- 직책수행경비는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국민부담의 최소화에 관한 예산의 원칙에 어긋난다.
- 직책수행경비가 삭감되더라도 업무추진비(240)와 기타운영비(210-16)가 있기 때문에 직책을 수행하는데(부대를 운용하는데) 드는 공적 비용은 여기서 충분히 충당될 수 있을 것이다.

③ 특정업무비 전액 삭감해야 할 근거

- 특정업무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및 이에 준하는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안 작성세부지침』, 191쪽)를 말한다. 특정업무비에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개인활동 경비와 일반지출을 하는 부서활동 경비가 있다.
- 기획재정부는 특정업무비가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위 기획재정부 자료, 186쪽)에 쓰인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와 구분짓고 있다.
- 특정업무비의 부당한 사용은 각 부처와 기관에서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인준이 거부된 이동흡 헌법재판관이다. 그는 재임기간 6년 동안 3억2000만원(매달 300~5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자기 개인 용도로 유용하였으며 심지어는 금융상품을 구입하는데 쓰기도 하였다. 문형표 보건복지장관 후보자도 특정업무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이 국회 청문회 때 밝혀졌다.
- 특정업무비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적 유용이나 불법적 사용이 부처여하를 불문하고 광범하게 퍼져있다. 더욱이 특정업무비는 그 성격이 모호한데다 품위유지비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할 관행이자 예산항목이다.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8100-882)

1. 개요

(단위 : 억원)

| 소관 | 사업 성격 | 2014년예산(A) | 2015년 예산안(B) | 증가(B-A) | 삭감 요구액 |
|-----|-------|------------|-----------------|---------|-----------|
| 국방부 | 계속 | 23,296 | 23,327 | 31 | 635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사업목적**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소요(일반회계전출금)”
- ② **2015년 예산안 내역** 국가부담금(기여금·퇴직수당·전투가산 부담금 등) 9896억원/보전금 1조3431억원(국방부, 『2015년도 예산안사업설명자료(Ⅱ-1)』, 2014.9, 158쪽)

3. 국가부담금 중 전투가산 부담금의 문제점

① 전투가산부담금은 군인연금 재정을 압박하는 큰 요인이다

- 군인연금법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4항은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다. 국가부담금 중 전투가산부담금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표1>을 보면 전투기간 3배 계산 규정에 따라서 국가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2012년에 861억원, 2013년 680억원, 2014년 661억원, 2015년 635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12~18%에 이른다.
- 전투종사기간 3배 계산은 군인연금 도입 때부터 있었다. 이 전투종사기간 3배계산은 군인연금법 도입 전인 1948.8~1959.12까지 사이에 임용된 군인에 대해서 재직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규정과 함께 군인연금의 재정을 도

입 초기 당시부터 적자로 전락시킨 주요한 요인이다.

- 한국전쟁과 공비토벌에 참가한 기간을 3배로 계산해 주다보니까 군인연금은 도입된 해가 1960년인데 수급자가 바로 다음해인 1961년부터 발생하는 결과로 되었다. 같은 해 도입된 공무원연금의 첫 수급자가 발생한 것이 1970년인데 비하면 무려 10년이나 빠른 것이다. 그리고 전투기간 3배 계산은 그에 해당되는 기간의 개인기여금을 받지 않고 대신 국가가 부담하였다. 즉 전투기간 3배 계산은 군인연금 수급자의 대량 조기발생과 장기간의 연금수급, 국가의 추가부담 등 군인연금이 도입 초기에 파탄되는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이다.

<표1> 전투가산금 액수 추이(단위:억원)

| 연도 | | 2012 | 2013 | 2014 | 2015 |
|-------|---------|-------|-------|-------|-------|
| 국가부담금 | 전투가산부담금 | 861 | 680 | 661 | 635 |
| | 기여금 부담금 | 4684 | 4580 | 5157 | 5493 |
| | 기타 부담금 | 3619 | 3629 | 3745 | 3768 |
| | 소계 | 9164 | 8889 | 9563 | 9896 |
| 보전금 | | 12500 | 13892 | 13733 | 13431 |
| 합계 | | 21664 | 22781 | 23296 | 23327 |

② 전투기간 3배계산제도는 일제의 군인연금에서 유래한다

- 전투기간 3배 계산제도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제의 군인연금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군국주의의 유산이다. “전투에 종사한 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군국주의 국가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상적 시점에서 생명기간을 전시와 같이 볼 수 없다는데 근거를 두고있다.”³⁾ 일본의 경우 패전 뒤 군국주의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이 통합되었고 군인우대제도도 없어졌다. “일본의 군인연금은 제2차세계대전전과 패전 후의 제도로 양분할 수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참전 시에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성격으로 무를 중시하여 군인을 우대하여 12~13년 군에 복무하면 연금수급 대상자가 되었고, 실복무 외에 전투근무 및 해외근무기간에 대하여 2배의 특별연수를 가산하여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직업군인은 연금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패전 후 1959년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의 제정으로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이 완전히 통합되고 자위대 군인도 공무원

3) 오광석,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13, 12쪽

의 한 분야로만 적용되었다.”⁴⁾

③ 전투가산에 따른 추가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다.

- 군인연금법 16조 4항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는 규정은 기간의 가산만을 규정한 것이고 그에 필요한 재정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추가되는 기간에 대해서 개인과 국가가 각각 부담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가 다 부담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에게 추가 기여금을 부담시키지 않고 기간 가산에 따른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또 군인연금법 16조4항에서 말하는 ‘전투’의 인정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전투참가기간의 인정 범위)를 보면 전투기간 가산이 인정되는 전투로는 “1.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 2. 제1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첫째 전투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연금수혜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또 국가재정 소요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를 국회 입법사항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적’이란 표현도 매우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지원행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 만약 이 시행령대로라면 작전명령에 의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군인들의 진압행위가 펼쳐질 때 이 경우도 군인연금법 16조4항의 ‘전투가산’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④ 전투종사기간 3배계산은 이중의 특혜다

-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군인은 65세부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월 17만원(2014년 기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다. 국가보훈처의 2014년 예산 가운데 참전명예수당은 5,122억5,400만원(대상자는 250,394명)이나 된다. 이밖에 국가보훈처의 기금 중에서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이 1,004억원이다. 특히 직업군들의 경우 전투기간 3배계산제도의 혜택을 받는데다 참전명예수당까지 지급받기 때문에 이중의 혜택을 받고 있다.

4) 김영석, “군인연금제도발전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논문, 경의대 석사논문, 2003, 35~36쪽

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다

- 전투기간 3배계산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대만 등에는 이런 제도가 없으며 멕시코나 과거 식민지전쟁을 수행해 왔던 프랑스정도에서나 볼 수 있다. 우리 국방부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해외작전 참가시 그 위험정도에 따라서 참가기간의 50%, 100%, 200%를 각각 가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 전전의 일제나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전투기간 3배계산은 부정한 식민지전쟁에 자기나라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유인책의 차원에서 주어진 특혜의 성격을 갖는다. 이점에서 한국이 도덕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⑥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 병들의 경우 한국전쟁이나 월남전, 또는 다른 전투에 참전했다 하더라도 연금가입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투기간 3배계산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간부라 하더라도 20년을 채우지 못하면 전투기간 3배계산은 퇴역연금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따라서 전투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연금과 연계시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 또 전투에 참가하면 그에 대한 수당 등 보수에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금으로까지 특혜를 연장하는 것은 이중의 특혜라 할 수 있다.

4. 건의사항 : 전투가산 부담금 635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전투가산부담금은 비록 군인연금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군인연금의 재정안정화나 군인연금의 현대화를 위해서 폐지되어야 할 규정이다.
- 전투가산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본법이나 시행령에도 없다.
- 전투가산이 인정되는 전투범위가 모호하고 또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전투가산제도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안고있다.
- 전투가산제도는 막대한 국가재정을 부담하게 하여 군인연금재정적자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5)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우리 군인연금현황과 외국제도소개』, 2007

평택기지이전사업(4231-301)

1. 개요

(단위 : 백만원, %)

| 소관 | 사업성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15년 예산안 | 삭감요구액 |
|-----|------|------|-------------------|--------------|---------|
| 국방부 | 계속 | | 2007~2016 (추정) | 592,459 | 592,459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산재되어 있는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 등의 이전을 통해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3. 국방주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미국 요구 따른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로 용산공원화 사업 중대 차질

- 한미양국은 이번 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04년 협정 체결을 통해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한 한미연합사령부와 작전센터(지하 병커), 8군 사령부, 연병장의 서울 잔류를 결정함. 한미연합사에 24만㎡를 새로 제공하게 됨으로써 기왕에 제공하기로 한 미국 대사관 부지(7.9만㎡) 등을 합쳐 현재 용산기지의 약 17%, 47만㎡를 미군이 사용하도록 한 것임.
- 한미당국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이유로 전작권 전환 연기나 한미 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운운하고 있음. 그러나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2003~2004년)은 전작권 환수 합의(2006~2007년)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서 전작권 환수 연기와 무관한 사안이며, 한미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이미 연락사무소 용으로 2.5만 평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음. (외교통상부, 「용산기지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 2004. 11, 3쪽)

-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의 실제 이유는 미국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평택기지 가족주택 건설 등의 요구 충족 불가, 서울의 유리한 생활환경과 문화생활의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한미연합사 간부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평택에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 건설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잔류한다면 주한미군은 사실상 서울과 평택에 각각 2개씩의 사령부를 차지하게 됨. 이는 미국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미 간의 협정을 위반하여 우리 국민을 이중으로 희생시키는 무도한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이로 인해 “용산기지 반환을 통한 정상적인 용산공원 건립으로 국민 복지 향상 기대”라는 국방부가 예산안 신청 시 제시한 ‘향후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없게 됨. 또한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 과정에서 빚어진 주민의 수난과 소모한 수조원의 비용, 이를 둘러싼 사회적 자원의 소모 등이 상당부분 무용한 것이 되어 버림. 한미연합사 등의 용산 잔류로 인한 각종 부담도 지속될 것임.

② 용산 협정 위반, 전면 재협상하고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은 포괄협정(UA) 2조 2항, 3항, 9항, 3조 3항, 5조 3항과 이행합의서(IA) 및 합동위원회를 위한 각서 4항 가. 다. 바.에 각 측면에서 한미연합사 이전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한미연합사 평택이전이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의 핵심 사항 중 하나임을 말해줌. 따라서 미측의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요구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그 귀책 사유는 당연히 미국에 있음.
-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 대한 중대한 상황 변경이고, 이 협정이 헌법 제60조 ①항이 규정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 만큼 차제에 전면적인 재협상을 통해 다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함.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이 4개 기지 추가 사유로 2004년 개정된 사례도 있음. 아울러 요구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부담을 미국이 지고, 사업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해야 함.
- 이처럼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와 관련하여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 없다는 정부 주장은 국회와 국민의 검증과 감시를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임. 국내법은 용어 하나만 바뀌도 국회에서 다시 의

결하는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협정의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회피하는 것은 위헌 불법임.

③ 사실상 무기 연기된 사업에 예산 배정해선 안 돼

- 한미당국이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을 전작권 환수와 연계시키고 전작권 환수 시기는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은 사실상 무기 연기된 것이나 다름없음. 사실상 무기 연기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임. 따라서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은 당연히 전면 중단되어야 함. 그래야 불필요한 예산의 추가적 낭비를 막을 수 있음.

HUAV 사업(2035-301)

1. 개요

(단위 : 백만원)

| 소관 | 사업 성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15년 예산안 | 삭감 요구액 |
|-----|-------|---------|----------|-----------|--------|
| 방사청 | 계속 | 880,000 | '14~'19년 | 28,779 | 28,779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북한 및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감시능력 확보
- ② Kill-Chain 구현을 위한 필수 감시 장비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이유

- ①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전장감시능력 기반 확보라는 사업목표는 주변국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 한반도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등을 전략적으로 감시·정찰하기 위해 도입하는 장비는 주변국과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글로벌호크의 자국 근접배치를 새로운 대공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글로벌 호크는 작전반경이 3,000Km에 달하고, 북한 면적보다 넓은 14만 km²에 이르는 지역을 36 시간에 걸쳐 단속 없이 탐지할 수 있어 대북 감시정찰용이라기보다는 대중, 대일 및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감시정찰 무기체계다. 따라서 이런 광역 정찰기능을 보유한 무기체계 도입은 불가피하게 주변국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② 글로벌 호크는 대북선제공격전략의 일환인 킬 체인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정찰·감시장비로 한반도 전면전을 불러올 도발적인 전력이다.

- 뉴욕 타임즈는 인터넷판 사설(2012. 12. 29)에서 “한국이 글로벌 호크를 보유할 경우 북한 전역을 작전 반경에 두게 된다.”며 “위기 국면에서 돌발적인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호크가 북한 전역에서 확보한 정보가 한반도 위기를 국지전으로, 국지전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 한·미 당국이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발사 이전에 요격하기 위한 '킬 체인'은 '맞춤형 억제전략'의 대북 선제공격을 이행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글로벌 호크가 확보한 대부분의 북한군의 미사일 훈련 동향은 킬 체인에 의해 선제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글로벌 호크를 통해 확보한 정보는 지나치게 민감하고 불필요한 과잉정보로 될 수 있다.

③ 글로벌 호크는 단순한 감시·정찰무기가 아니라 공격무기의 하나로, 킬 체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선제공격 무기체계다.

- 글로벌 호크는 미사일이나 폭탄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무기로, 감시·정찰자산의 도입이라는 사업목적에 위배된다. 글로벌 호크는 RQ-4A이 2천 파운드, RQ-4B는 3천 파운드의 무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사저널, 2011. 9. 28). F-5E 타이거 II와 같은 구형 전투기 무장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적지 않은 무장력이다.
- 따라서 글로벌 호크는 대북 정찰·감시 중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일 경우 곧바로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남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 중 가장 먼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선제공격 무기인 셈이다.

④ 통신 감청 기능이 빠진 ‘반쪽짜리’ 글로벌호크

- 국방부가 도입하는 글로벌 호크가 국방부가 요구하는 작전수행능력을 갖출지도 의문이다. 국방부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글로벌호크’에는 통신

감청 기능이 빠지고 군사 동향을 실시간 촬영하는 영상 수집 장비만 탑재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감청 관련 장비를 팔 수 없다는 입장을 일방 통보해 왔고 국방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반쪽짜리 성능을 갖춘 장비를 도입하는데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성능개조에 들어가는 비용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 또한 성능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통신 감청용 ‘백두’ 정찰기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으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또한 미 국방부가 2011년 10월부터 3개월간 평가한 결과 글로벌 호크 블록 30형은 작전임무의 40%밖에 수행하지 못했고, 발전기 등 핵심부품의 고장이 16곳이나 발견되었다(아시아경제, 2011. 6. 15). 결국 한국이 도입한 글로벌 호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임무도 수행하기 어려울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⑤ 한국군은 대북 전구작전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전략·전술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감시·정찰전력을 갖추고 있다.

- 국방부는 “대부분의 전략·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전술 레이더와 기타 특수 분야 정보도 거의 100%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국방부 전시작전통제권 T/F,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이해」, 2006. 8. 17, 13쪽)고 밝힌 바 있다.
- 남한군은 현재 한반도 전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략 영상정보에 대해서만 미군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남한은 지금도 아리랑 2호(해상도 1m)와 아리랑 3호(해상도 70cm)를 통해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합성개구레이더를 장착해 전천후 영상정보 획득이 가능한 아리랑 5호(해상도 1m)도 발사되어 고해상 전략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5개의 군사 정찰위성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 남한군은 유사시 북한의 전략표적(800여 개로 추정, 동아일보, 2009. 11. 2)을 공격하기 위한 목록을 작성해 놓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북한이 전략표적 대상을 새로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정보 획득은 현재 자산으로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 한편 남한의 정보 전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북한은 전략 영상·신호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전술 정보의 획득에 있어서도 남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북한은 정찰기를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남한은 모두 51대의 신호·영상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다. (『Military Balance 2010』) 여기에 더해 정찰 포드를 장착한 10여 대의 F-16, 서처 2 무인정찰기, 군단이 운영하는 무인 정찰기(‘송골매’) 등의 정보자산도 보유하고 있다. 결국 글로벌 호크의 도입은 불요불급한 과잉 전력으로 된다.

⑥ 미국의 글로벌 호크의 수출은 무기 수출에 관한 미국의 전형적인 이중 잣대 정책이다.

- 글로벌 호크는 MTCR 범주 1에 해당하는 수출금지 품목으로, 이를 수출하는 것은 군비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MTCR 취지에 반한다. 미국은 2006년 MTCR 총회에서 무인비행체 통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글로벌 호크가 감시·정찰용라는 이유로 2010년도에 이를 MTCR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중앙일보, 2011. 9. 14) 2012년 미 국방부는 미 의회에 글로벌호크의 한국 수출 승인을 요청했고 2013년 4월 글로벌호크의 한국 판매를 의회에서 승인했다. 이는 무기 수출에 관한 미국의 전형적인 이중 잣대 정책으로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시킬 뿐이다.

⑦ 천문학적 유지운영비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

- 한국 국방연구원이 2012년에 실시한 HUAV 사업타당성 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호크의 시간당 운용·유지비는 약 3만5,000달러 수준으로 20년간 운영한다면 추가로 약 6조원의 운용유지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글로벌 호크의 제작사인 노스럽그루먼사에 따르면 글로벌 호크의 시간당 운용비용은 지난 201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만4,000달러(약 2,450만원)에 달한다.
- 미국도 글로벌 호크의 도입 가격과 운용비용이 부담스러워 운용중단 또는 감축을 추진했었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2012년 1월 국방부 삭감

대상에 글로벌 호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 미 국방부는 RQ-40블록 30형 글로벌 호크의 운용을 종료하고 구 기종인 U-2정찰기를 연장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한미군도 글로벌 호크 배치 계획을 철회하고 U-2 정찰기를 2020년까지 운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⑧ 글로벌 호크는 도입을 하더라도 사실상 미국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등 군사주권이 훼손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미국은 글로벌 호크와 인공위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감시·정찰 네트워크를 운용하기 위해 지상 수신기지 시설이 갖춰진 괌의 미군기지에 운용기지를 배치해야 한다는 뜻을 한국에 알려 왔다.('디펜스 21', 한겨레신문, 2011. 4. 29) 이는 도입된 글로벌 호크를 통해서 획득한 모든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미군의 자산으로 운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각한 군사주권의 훼손이 아닐 수 없다.

⑨ **실효성 없는 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문제점** :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추진된 사업이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업일수록 더욱 엄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38조 4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는 국회의 결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국방연구원이 수행하였다. 국방부의 무기 도입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국방부 산하 기관이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재의뢰해야 한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제대로 된 작전 수행도 어렵고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마찰만 불러오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예산 28,779 백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현무 2차 성능개량 (1934-313)

1. 개요

(단위 : 백만원)

| 소관 | 사업 성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15년 예산안(B) | 삭감 요구액 |
|-----|-------|------|------|-----------------|-----------|
| 방사청 | 계속 | | | 217,862 | 217,862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현무2차 개량사업은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성능(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개량하여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타격능력 보유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한국군은 이미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현무 2차 성능개량은 과잉전력이며 유사·중복사업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 한국군은 이미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500km의 탄도 미사일 현무-2B를 2009년 말부터 중부전선00부대와 동부전선 00부대에 실전배치했다. (사거리 500km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2B 실전배치했다! 월간조선 2011년 3월) 또한 사거리가 각각 500km, 1,000km, 1,500km에 달하는 순항미사일 현무3A, 현무3B, 현무3C를 2008년부터 양산해 이미 전력화하고 있다.
- 공군 역시 사정거리가 270km인 공대지 순항미사일 SLAM-ER, 120km의 사거리를 지닌 AGM-84 ‘하푼’ 공대지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도 사거리 500~1,000Km인 함대지 미사일 '해성-2와 사거리 500Km인 잠대

지 미사일 '해성-3'을 보유하고 있다.

② 한국군의 미사일은 성능에서 북한을 앞도하고 있는 만큼 성능개량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다.

- 국방부는 ‘미사일지침’개정 브리핑(2012. 10. 8)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정확도와 탄두의 파괴력 면에서 우리와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스커드급 이상의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은 …… 아무 군사적 효과가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 미사일의 이동을 실시간 탐지-결심-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스커드한테 우리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가 맞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지대지 미사일 정확성 비교>

| 북한 | 탄착정밀도(CEP) | 남한 | 탄착정밀도(CEP) |
|-------|---------------|-----------|------------|
| 스커드-A | 450~1,000m | 현무-2A | 30m |
| 스커드-B | ~1,000m | ATACMS | 10m |
| 스커드-C | ~700m | 현무-3A,B,C | 5m 이내 |
| 노동미사일 | ~1,000-2,000m | | |

<2012동북아 군사력과 전력동향, 국방연구원 2013>

더욱이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전력을 운용하는 데서도 여러 가지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은 C4ISR 능력, 정비능력, 품질관리 능력, 미사일 부대의 실전적 훈련 수준 등의 취약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50~75%정도만 효과적으로 운용 가능할 것”(2010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한국국방연구원 2011년, 263p)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현무 2차 개량사업은 대북선제공격전략의 실행수단인 킬 체인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무기체계다.

- 국방부는 2012년 10월 7일 ‘미사일지침 개정’ 보도자료에서 사거리 연장을 통해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성능 향상된 미사일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게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 가능

한 일련의 체계(Kill Chain)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북한의 핵·미사일을 발사 이전에 요격하기 위한 '킬 체인'은 '맞춤형 억제 전략'의 대북 선제공격을 이행하는 수단이며 현무 2차 성능개량 사업은 킬 체인의 주요 무기체계 중 하나이다.
-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또한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우리나라의 헌법(5조 1항)과 유엔헌장(51조) 자위권 발동의 요건을 위배하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 킬체인이 구축되면 한반도는 상시 전시체제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북한의 모든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공격 대상이 되며 나아가 시험 발사를 실제 공격으로 오인해 공격할 수도 있어 그만큼 전쟁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더구나 한국군은 일본이나 오키나와, 괌, 미국으로 날아갈 북한의 탄도미사일도 발사 전에 선제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북일, 북미 간 전쟁의 대리전을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④ 현무 2차 성능개량은 주변국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성할 수 있다.

- 러시아와 중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한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하여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알렉산드로 루카세비치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12년 10월 9일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반도 군사정치 상황의 추가적 악화와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한국 지도부의 이 같은 (사거리 연장) 의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해왔다”면서 “미국 파트너들에게도 같은 신호가 여러 차례 전달됐다”고 밝혔다.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며 대규모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각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자 각 측이 지켜야 할 의무 및 책임”이라며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불요불급한 현무 2차 성능개량 사업 예산 2,178억6,2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사업 (1635-304)

1. 개요

(단위 : 백만원)

| 소관 | 사업 성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15 예산 | 삭감 요구액 |
|-----|-------|---------|---------|---------|---------|
| 방사청 | 계속 | 540,531 | '08~'17 | 133,169 | 133,169 |

2.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

전쟁 초기 적 중심의 핵심전략표적을 고가의 아 전투기 생존성을 증대시키면서 정밀 타격하기 위하여 사거리 및 파괴력이 우수하고 정확도가 높은 공대지 유도탄을 국외 구매로 확보.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의 도입은 과잉전력이며 유사 중복사업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 한국군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무기체계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사거리가 각각 500km, 1,000km, 1,500km에 달하는 순항미사일 현무3A, 현무3B, 현무3C를 2008년부터 양산해 이미 전력화하고 있다.
- 공군 역시 사정거리가 270km인 공대지 순항미사일 SLAM-ER, 120km의 사거리를 지닌 AGM-84 '하푼' 공대지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도 사거리 500~1,000Km인 함대지 미사일 '해성-2와 사거리 500Km인 잠대지 미사일 '해성-3'을 보유하고 있다.

- 국회 국방위도 2008년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외에도 공군은 탄두중량은 작으나 사거리 및 유도방식이 유사한 다양한 공대지 유도폭탄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공대지 유도폭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방사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73쪽)
- 이렇듯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은 과잉전력이자 중복사업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②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대북선제공격전략의 일환인 킬 체인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무기체계로 북한의 핵미사일의 선제공격을 자초하는 사업이다.

- 국방부는 2014년 국방예산 보도자료를 통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이 북한의 핵,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2013. 10월 한미 국방장관은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승인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촉발하는 전략이다.
-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는 한미양국이 합의한 이른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개념’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이제 이른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실전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또한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우리나라의 헌법(5조 1항)과 유엔헌장(51조) 자위권 발동의 요건을 위배하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 북한의 핵·미사일을 발사 이전에 요격하기 위한 '킬 체인'은 '맞춤형 억제전략'의 대북 선제공격을 이행하는 수단이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킬 체인의 주요 무기체계 중 하나이다.

③ 수의계약에 따른 가격 폭증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 방위사업청은 67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 결과 보도 자료를 통해 “최초 미국의 재즘(JASSM)과 독일의 타우러스(TAURUS)간 경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을 고려할 때 조속한 획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 재즘(JASSM) 도입이 제한되어 독일의 타우러스(TAURUS)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방법을 수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방위사업청은 최초 총사업비를 2,213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현재는 5,323억 원으로 2.4배 이상 폭증했다. 타우러스 생산업체가 2011년 제안한 가격은 5,683억 원이며 사업추진방식이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 총사업비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연구원도 “수의계약에 의한 제약으로 상세 비용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작전목적에서 위법적이고 과잉전력이자 중복 사업이며 가격 폭증이 우려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과연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스럽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소위는 “타우러스 측의 가격 수준이 우리의 재정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은 대상 장비의 하나인 재즘은 미 국방부의 한국판매 불가 결정으로, 타우러스는 가격 문제로 최초 예산이 편성된 2008년~2013년 10월 사이 사업추진전략이 2차례나 변경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국회 국방위의 문제제기(국회국방위 『방위사업청소관 201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37~138쪽)에 따라 국방부가 뒤늦게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나 향후에도 총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과 예산 통제가 필요하다.

(216) 패트리엇 성능 개량(2039-303)

1. 개요

(단위 : 백만 원)

| 소관 | 사업 성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15년 예산안(B) | 삭감 요구액 |
|-----|-------|-----------|----------|-----------------|-----------|
| 방사청 | 계속 | 1,282,967 | '14~'20년 | 35,447 | 35,447 |

2. 방사청이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증대에 따른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방호 능력 향상.
- ② 핵탄두 완전 파괴가 가능한 Hit-To-Kill 요격 능력 확보.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사업 성격** : 패트리엇 성능 개량 사업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목적으로 PAC-2를 PAC-3(Configuration-3)으로 성능을 개량하고 에린트(ERINT) Hit-To-Kill 요격미사일을 직도입하기 위한 사업이다.
- ② **한반도에서는 종말 하층방어체계 구축이 불가능** :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발사된 지 불과 3~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탐지→식별→추적→요격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는 중심이 매우 짧아 PAC-3 등의 요격체계에 의한 종말 하층단계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한국의 국방연구원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2010~2012년)에 의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 ③ **PAC-2, PAC-3의 요격 능력 미지수** :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 국방 장관 코언은 걸프전(1991년)에서 PAC-2의 요격 성공률이 44발 발사에 0%였다고 밝힌 바 있다('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 2010. 11). PAC-2 탄두의 근접신관 개량과 유도 레이더와 센서 등의 개량이 이루어진 이라크전(2003년)에서도, 미 육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요격율은 40%를 밑돌았다. 이라크전에서 이라크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걸프전 때 이라크가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짧고 속도도 늦어(Kinetic Energy Kill for Ballistic Missile Defence : A Status Overview, CRS Report, 2007. 1. 5) 그나마 요격 가능성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격율이 40% 미만이었다는 것은 PAC-2, PAC-3의 성능 개량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 육군은 걸프전 때도 PAC-2 요격율을 70% 이상으로 터무니없이 부풀렸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40%라는 요격율도 믿기 어렵다.
- ④ **방어지역 매우 협소** : 설령 PAC-3가 실효성 있는 요격 능력을 갖춘다고 해도 그 방어 범위가 30Km 미만으로 비용에 대해 효용성이 매우 낮다. 이는 PAC-3 도입 등 종말 하층방어에 1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방호할 수 있는 지역은 불과 몇몇 주요 민간시설이나 군사 시설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민간인들이나 핵발전소를 포함한 민간시설들은 방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⑤ **감당할 수 없는 예산 부담** :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표를 군사 시설, 항만, 비행장 등 주요 전략, 작전 지역 30 군데-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27~36기로 추정되며, 이에 동시 공격이 가능한 지역은 27~36개 지역-로 제한하더라도 최소 30개 포대, 180기의 발사대와 약 3,000발의 요격미사일을 필요로 한다. 현재 주한미군은 불과 2만 8,000여 명의 병력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2개 대대, 8개 포대(48기)를 수원, 오산, 군산, 대구 등에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 60만 병력과 주요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데는 30개 포대로도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에 대한 비용은 PAC-3 탄값만 최소 10조 원 이상(발 당 탄값 약 35억 원, 2012년도 미군 도입 가격, 한국군은 이보다 두 배 이상의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될 것임), 발사대나 레이더, 통제소 등 장비 추정이 최소 6조 원(PAC-2 도입가 적용 시, PAC-3 장

비가 2배 이상) 등 최소 16조 원 이상으로 1년간 방위력 증강사업비 10조 원의 1.5배에 넘어서는 막대한 비용이다. 미국이 대만에 제공한 ERINT탄 가격(2008년) 930만 달러를 적용하면 1년 국방예산에 이른다. (「Taiwan : Major U.S Arms Sales Since 1990」, 2012. 11. 29)

- ⑥ **비용 대비 효과 매우 낮아** :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최대 600~800여 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100만 달러, 10억 원 추정)을 요격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패트리어트 도입 비용만 적용하더라도, 무려 최소 약 200억 원에 달한다. 이토록 효용성이 낮은 사업에 수십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⑦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 : 이 사업은 2020년까지 국내 개발하기로 한, PAC-3와 비슷한 성능의 철매-Ⅱ 성능 개량 사업과 중복 사업으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다. 철매-Ⅱ 요격미사일(약 11억 원)은 PAC-3 ERINT탄(2008년 대만 제공 가격)에 비해 1/8 정도로 훨씬 싸다. 따라서 성능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PAC-3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만약 국방부가 철매-Ⅱ 개량 성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PAC-3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철매-Ⅱ 성능 개량 사업을 중단해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50조 3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국회의 결의가 요구된다.
- ⑧ **실효성 없는 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문제점** :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추진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의 결함이 드러난 사례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업일수록 더욱 엄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38조 4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50조 3항에 의거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의 결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국방연구원이 수행하였다. 국방부의 무기 도입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국방부 산하 기관이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재의뢰해야 한다.

- ⑨ **결론 및 건의 사항** : 작전적, 비용적 효율성이 매우 낮고, 절차상 하자가 크며,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PAC-2 성능 개량 사업을 중단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4. 삭감 요구액

- 354억4,700만원 전액

(208)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GEMT(2036-301)

1. 개요

(단위 : 백만 원)

| 소관 | 사업 성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15년 예산안(B) | 삭감 요구액 |
|-----|-------|---------|----------|-----------------|-----------|
| 방사청 | 계속 | 240,300 | '14~'16년 | 69,575 | 69,575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북한의 핵 및 탄도탄 위협 증대에 따른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방호능력 향상.

3. 국방부 주장의 사업 목적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사업 성격** : GEMT탄 도입 사업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제한된 탄도탄 요격 능력의 ATM탄을 구매, 근접신관을 개량하여 보다 나은 요격 능력의 GEMT탄으로 성능을 향상시켜 도입하는 사업이다.
- ② **잘못 설정된 사업 목적** :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지 불과 3~4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탐지→식별→추적→요격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중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에서 PAC-2, PAC-3 등의 요격체계에 의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한국의 국방연구원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이 공동 실시한 연구(2010~2012년)에 의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ATM탄을 GEMT탄으로 성능 개량하기 위한 사업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무의미한 사업이다.

- ③ **ATM탄과 GEMT탄의 작전 실패 사례와 요격 가능성 미지수** : 걸프전(1991년)에서 요격율 0%라는 대실패를 경험한 요격탄이 바로 ATM탄이다. ATM탄을 성능 개량한 GEMT탄이 사용된 이라크전(2003년)에서도 미 국방부의 발표(9발 발사 모두 요격 성공)와 달리 요격율에 대한 논란이 크다. PAC-2 탄두의 근접신관 개량과 유도 레이더와 센서 등의 개량이 이루어진 이라크전(2003년)에서도, 미 육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요격율은 40%를 밑돌았다. 이라크전에서 이라크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걸프전 때 이라크가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짧고 속도도 늦어(Kinetic Energy Kill for Ballistic Missile Defence : A Status Overview, CRS Report, 2007. 1. 5) 그나마 요격 가능성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격율이 40% 미만이었다는 것은 PAC-2, PAC-3의 성능 개량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 육군은 걸프전 때도 PAC-2 요격율을 70% 이상으로 터무니없이 부풀렸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40%라는 요격율도 믿기 어렵다.
- ④ **방어지역 매우 협소** : GEMT 요격탄을 장착할 PAC-2는 방어 범위가 30Km 미만의 점방어용이다. 이는 ATM 요격탄을 GEMT 요격탄으로 성능을 개량해 요격율을 높인다고 해도 방호할 수 있는 지역은 몇몇 주요 민간시설이나 군사적 시설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여전히 대부분의 민간인들이나 핵발전소를 포함한 민간시설들은 방호할 수 없다.
- ⑤ **감당할 수 없는 예산 부담** :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표를 군사 시설, 항만, 비행장 등 주요 전략, 작전 지역 30 군데—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27~36기로 추정되며, 이에 동시 공격이 가능한 지역은 27~36개 지역—로 제한하더라도 최소 30개 포대, 180기의 발사대와 약 3,000발의 요격미사일을 필요로 한다. 현재 주한미군은 불과 2만 8,000여 명의 병력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2개 대대, 8개 포대(48기)를 수원, 오산, 군산, 대구 등에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 60만 병력과 주요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데는 30개 포대로도 터무니없이 부족할 지경이다. 이에 대한 비용은 GEMT 요격탄값을 적용했을 때도 탄값만 최소 10조 원 이상(발 당 탄값 약 45억 원)으로, 발사대나 레이더, 통제소 등 장비 추정가 최소 6조 원(PAC-2 도입가 적용

시, PAC-3 장비가는 2배 이상임) 등 모두 최소 16조 원 이상으로 1년간 방위력 증강사업비 10조 원의 1.5배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다.

⑥ **비용 대비 효과 매우 낮아** : 이는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600~800여 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100만 달러, 10억 미만)을 요격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200억 원 이상을 상회한다. 종말 하층방어체계(철매-II, PAC-2, PAC-3 등)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16조 원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비효율적인 사업에 수십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⑦ **이삼중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 GEMT탄 도입 사업은 ERINT탄을 들여오게 될 패트리엇 개량 사업과 중복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ATM탄을 GEMT탄으로 성능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추가로 ATM탄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GEMT탄으로 성능을 개량하기 때문에 ERINT탄 도입 사업과 중복되며,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또한 이 사업은 2020년까지 국내 개발하기로 한 철매-II 개량사업 사업과도 중복되는 사업으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다. 철매-II 요격미사일(약 11억 원, 김성걸, 2008. 1)은 PAC-2 GEMT탄에 비해 약 1/4 정도로 도입 가격도 훨씬 싸다. 따라서 성능이 비슷하다면 굳이 PAC-2 GEMT탄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만약 국방부가 철매-II 성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PAC-2 요격탄을 도입하는 것이라면 철매-II 사업을 중단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50조 3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국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⑧ **GEMT탄 도입 사업은 미국 재고탄 처리를 위한 사업** : ATM탄을 구입해서 GEMT탄으로 성능 개량하는 것이 GEMT탄을 직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도 아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한 ATM 가격은 발당 약 3.7백만 달러(Missile Theat.com)로, 여기에 성능 개량비 발당 약 50만 달러(Army-Technology.com)를 더하면 420만 달러로 미국이 2010년에 쿠웨이트에 제공한 GEMT탄 발당 430만 달러와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한국 국방부의 미국 ATM탄 도입은 결국 미국의 재고 ATM탄을 처리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

이 든다. 미국은 이미 2014년 회계연도부터 한국이 직도입을 추진 중인 PAC-3 ERINT탄보다 사거리와 요격 고도가 향상된 PAC-3 MSE 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⑨ **FMS 도입과 사업 절차상의 문제점** : GEMT탄의 도입은 일단 미국으로부터 ATM탄을 도입하여 레이시온사에서 GEMT탄으로 성능 개량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ATM탄을 도입한 후 성능 개량 사업까지 거쳐야 한다면 국방부가 목표로 하는 2016년까지의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FMS 구매에 의거한 도입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될 것이며, 따라서 2016년까지 전력화한다는 사업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긴급소요제기 사업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해 준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사업 지연 우려와 함께 “긴급소요 예산은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과다하다.”며 “2014년 사업집행 시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402쪽)

⑩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 면제의 문제점** : GEMT탄 도입 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고, 잘못된 사업 목표를 내세우고 있어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어야 할 사업이다. 그런데도 국가안보 관련 사안이라고 해서 타당성 및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다. 이는 국가재정법의 결함과 기획재정부의 직무유기를 드러낸 것이다. 국가안보 사안이라면 더 엄격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공신력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내세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어야 한다. 특히 군피아에 의한 부정·부실 무기도입과 예산 횡령 및 낭비 사례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회는 국가재정법 38조 4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거나 50조 3항에 의거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국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⑪ **대미 군사적 예속 확대** : 국방부 원래 한국의 미국 MD 가입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미국 MD 요격체계를 직도입하지 않고 철매-II 등을 국내 개발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미국 요격 체계의 직도입으로 MD 체계의 대미 예속 가능성이 한층 가중되게 되었다.

- ⑫ **결론과 건의 사항** : 이에 작전적, 비용적 효용성이 매우 낮고, 미국 MD 체계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며, 무엇보다도 미국 채고 요격탄을 처리해 주기 위한 GEMT탄 도입 사업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

4. 삭감 요구액

- 695억7,500만원 전액

(196) 철매-Ⅱ 성능 개량(R&D)(1934-308)

1. 개요

(단위 : 백만 원)

| 소관 | 사업 성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15년 예산안(B) | 삭감 요구액 |
|-----|-------|---------|----------|-----------------|-----------|
| 방사청 | 계속 | 161,499 | '12~'17년 | 35,113 | 35,113 |

2. 방사청이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 효과

- ①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성능 개량하여 대 항공기 및 대 탄도탄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대공유도무기를 국내 연구 개발하는 사업.
- ② 핵심 기술(레이더, 사격통제장치, 유도기술 등) 확보로 레이더 및 유도 무기 국산화 개발 지속 추진 가능.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 ① **사업 성격** : 비행기 요격용 철매-2에 Hit-To-Kill 방식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에 개발을 완료하기로 한 사업.
- ② **잘못된 설정된 사업 목표** :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발사된 지 불과 3~5분 만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탐지→식별→추적→요격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국방연구원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이 공동 실시한 연구(2010~2012년)에 의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방어 중심이 지극히 짧은 한반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따라서 철매-Ⅱ 개량 사업은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일 뿐이다.

- ③ **사업 목표 달성 불가능** : 철매-II를 Hit-To-Kill 방식의 요격미사일로, 그것도 불과 몇 년 안에 성능 개량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MD 기술에서 독보적으로 앞서 있는 미국도 Hit-To-Kill 방식의 탄두를 개발하기까지는 30여 년이 걸렸다. 따라서 이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④ **Hit-To-Kill 개발 성공하더라도 요격 가능성은 미지수** : Hit-To-Kill 방식의 요격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실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Hit-To-Kill 요격미사일도 실전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사례가 없다. PAC-3 요격률이 70%에 이른다는 일각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걸프전 당시 PAC-2의 요격율은 0%였으며('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 2010. 11), 탄두의 근접신관 개량과 유도 레이더와 센서 등의 개량이 이루어진 이라크전에서도, 미 육군의 보고에 따르면, 요격율은 40%를 밀돌았다. 이라크전에서 이라크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도 사거리도 짧고 속도도 늦어(Kinetic Energy Kill for Ballistic Missile Defence : A Status Overview, CRS Report, 2007. 1. 5) 그나마 요격 가능성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40% 미만의 요격율을 보인 것은 PAC-2, PAC-3 성능의 한계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미 육군은 걸프전 때도 PAC-2 요격율을 70% 이상으로 터무니없이 부풀렸는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40%라는 요격율도 믿기 어렵다.
- ⑤ **철매-II의 방어지역 협소** : 철매-II의 성능 개량에 성공하더라도 철매-II는 방어 범위가 30Km에 불과하다. 따라서 철매-II가 방어할 수 있는 곳은 몇몇 주요 민간시설이나 군사시설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즉 핵발전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민간시설과 민간인들은 방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⑥ **감당할 수 없는 예산 부담** :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표를 군사 시설, 항만, 비행장 등 주요 전략, 작전 지역 30 군데-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27~36기로 추정되며, 이에 동시 공격이 가능한 지역은 27~36개 지역-로 제한하더라도 최소 30개 포대, 180기의 발사대와 약 3,000발의 요격미사일을 필요로 한다. 현재 주한미군은 불과 2만 8,000여 명의 병력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2개 대대, 8개

포대(48기)를 수원, 오산, 군산, 대구 등에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 60만 병력과 주요 군사시설만 보호하는 데도 30개 포대로도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이다. 30개 포대를 모두 철매-Ⅱ로 충당할 때 소요 비용은 탄값 최소 3조 원 이상(발 당 탄값 약 11억 원, 김성걸 박사학위 논문 000쪽), 발사대, 레이더, 통제소 등 장비 도입 추정가 최소 6조 원(PAC-2 도입가 적용 시) 등 모두 9조 원 이상으로 1년간 우리나라 방위력 증강사업비 10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비용이다.

⑦ **중복투자과 예산 낭비** : 철매-Ⅱ 성능 개량 사업은 PAC-2 도입 사업, PAC-2의 PAC-3로의 성능 개량 사업, PAC-2탄 도입 사업과 GEMT탄으로 성능 개량 사업, GEMT탄 직도입 사업, PAC-3 에리트 탄 직도입 사업 등 수많은 사업들과 중복된다. 이들 중복 사업 비용으로만 이미 2조 원 이상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도 최소 2조 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따라서 개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철매-Ⅱ 성능 개량 사업을 중단하여 양산을 막는 것이 그나마 중복투자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다른 중복 사업들도 통폐합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거나 전면 폐기해야 할 것이다.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50조 3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국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⑧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 면제의 문제점** : 철매-Ⅱ 성능 개량 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고, 잘못된 사업 목표나 달성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한 사업 목표를 내세우고 있어 반드시 타당성 및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가안보 사안이라고 해서 타당성 및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의 결함과 기획재정부의 직무유기를 드러낸 것이다. 국가안보 사안이라면 타당성 및 예비 타당성 조사를 더 엄격히 실시해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공신력 있고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 타당성 및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군피아에 의한 부정·부실 무기도입과 예산 횡령과 낭비 사례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타당성 및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가재정법 38조 4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거나 50조 3항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결의해야 한다.

- ⑨ **결론 및 건의 사항** : 작전적, 비용적 효율성이 매우 낮고, 달성 불가능한 사업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크고, 중복투자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철매-Ⅱ 성능 개량 사업을 중단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4. 삭감 요구액

- 351억1,300만원 전액

(75) 차기 다련장 (1431-312)

1. 개요

(단위 : 백만원)

| 소관 | 사업 성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15년 예산안(B) | 삭감 요구액 |
|-----|-------|-----------|--------|-----------------|-----------|
| 방사청 | 계속 | 3,341,500 | 14~20년 | 320,594 | 320,594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개전초기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 장사정포를 정밀 타격하는 자산 필요
- ② 敵 포병화력 대비 我 포병화력의 수적 열세를 보완하는 질적 우위의 자산 필요
- ③ 현재 운영하는 130mm 다련장은 대화력전 수행능력이 부족하며, 노후화(수명주기 30년 초과) 되어 새로운 다련장 체계 필요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한국군은 이미 북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차기다련장 구축은 과잉전력이며 유사 중복사업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 약 340여문이다. (‘수도권 위협 北 장사정포 340여문 중 절반이 산 너머 북쪽에… 육군 곡사화기로는 즉각 대응 과외 못한다.’조선일보, 2011. 4. 9) 이에 반하여 남한의 K-9 자주포는 1990년대부터 6차에 걸친 양산사업으로 2006년 말 기준 약 300여문이 실전 배치됐다.
 - 이후 9차에 걸친 양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700여대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비롯한 최전방 부대에 집중

배치되었다.('北 장사정포 맞설 軍핵심전력 'K-9' 만성 고장' 조선일보, 2012. 10. 5.) MLRS 역시 2006년 말 기준으로 60여문이 실전 배치되었으며 추가도입을 통해 현재는 60여문보다 많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K-9자주포와 MLRS를 포함하여 공군의 합동정밀 직격탄(JDAM), 레이저 유도폭탄(GBU-24), 중거리 GPS유도켓 폭탄(KGGB), 육군의 차기전술유도무기 등 북 장사정포 대응 무기만 10여종을 확보하고 있고 확보할 계획으로 충분한 대응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 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적의 진지를 평시에 조준하고 있고 전시에도 연합전력으로 이를 철저히 감시해서 보유하고 있는 타격자산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상 다연장 로켓시스템, K-9자주포 뿐만 아니라 한,미 공군전투력을 활용해 격렬하게 됩니다.” 라며 북한 장사정포의 수도권 위협은 현 전력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국방저널> 2009. 8 '국방정책 대담 급변 안보환경에 대비하는 군'>)

② 한국군의 포병화력은 이미 북한에 질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 K-9자주포가 가지고 있는 전차에 버금가는 기동력, 자동사격통제장치, 우수한 방호력은 수동사격체제와 미흡한 기동력 및 방호력을 가지고 있는 북의 170mm 자주포에 비하여 질적으로 우수하다. (북한 무기체계 양적, 질적평가 한국국방안보포럼, 2010. 10 65p)
-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MLRS도 북의 240mm 방사포에 비하여 기동력이 우수하며 자탄에 의한 화력 범위도 넓다. 특히 MLRS는 재장전 시간이 3분인데 반하여 북의 240mm 방사포는 22분으로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기에 양적이나 질적으로 북의 장사정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 최근 북이 300mm 신형방사포를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군 역시 K-9자주포의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과잉전력이며 유사중복 사업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차기다련장 예산 320,594백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211)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 CBU-105(2036-304)

1. 개요

(단위: 백만원)

| 소관 | 사업성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15년 예산안 | 삭감 요구액 |
|-----|------|---------|--------|--------------|-----------|
| 방사청 | 계속 | 283,900 | 12~17년 | 59,968 | 59,968 |

2.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

- ① 정밀타격, 비살상전으로 변화하는 미래전에 대비하여 정밀유도확산탄 확보필요
- ② 북한 지상군 위협 대응, 북한의 전차/장갑차 조기 무력화
- ③ 재래식 확산탄(MK-20/CBU-87) 사용 제한에 따른 전력 공백방지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이유

- ①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은 비살상전에 대비한다는 국방부의 사업목적에 위배된다.

- 비살상전은 치명적인 인명피해, 재산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인원·장비·시설·체계를 무능화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군사 활동이다.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비살상전’ 이해와 발전 제언, 최대인 군사평론 2009. 8 320p) 그러나 확산탄은 가능한 넓은 지역에 무수한 자탄을 통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비살상전과는 정반대의 작전목적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다.
- 국방부는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CBU-105)의 경우 BLU-108 소폭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열원을 감지하는 스킵탄두가 장착되어 있어 기존의 확산탄과는 달리 정밀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미국이 전투 역사상 처음으로 CBU-105 확산탄 6발을 투하했

고 AFP통신의 한 특파원은 미군의 공습으로 최대 48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 구형 미 확산탄 사용제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형 확산탄을 도입하겠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어불성설로 국제적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확산탄은 구형이든 신형이든 모두 국제법에서 금지된 무기이기 때문이다.

②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은 과잉 전력이며 유사 중복투자사업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 국방부는 북한 지상군 위협 대응 및 북한 전차/장갑차 조기 무력화를 위해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군은 이미 북의 기갑전력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과잉전력이며 중복투자다.
-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는 대부분 구형전차로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K1전차, K1A1전차가 성능 면에서 압도한다. 최근 북한이 900대의 신형 전차를 배치했지만 남한 역시 K2 신형전차를 2014년 6월부터 배치하고 있어 북한의 기갑전력에 대응할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신형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현궁(峴弓)'을 개발하여 2015년부터 실전 배치할 예정이며 공격헬기, F-15K와 KF-16에 장착된 공대지 미사일 등 북한 기갑전력에 대비한 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③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은 국제법을 위반한 비인도적 무기다.

-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이며 그 중 1/3이 아이들(한겨레 21, 2008. 6. 12)일 정도로 국제법에 반하는 반인도적 무기다. 가능한 넓은 지역에, 무수한 과편으로,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할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확산탄은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이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군사적 공격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 200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확산탄의 사용·생산·비축·이전을 금지하는 확산탄 금지협약이 채택되고 2010년 8월 1일에 정식 발효되었다. 2014년 8월 기준으로 총 113개국이 확산탄 금지협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협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 한국이 확산탄 금지조약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해서 확산탄 생산, 수출, 수입 및 저장, 사용이 합법이라 할 수 없다. 국제 인도법의 관습은 불법한 현상의 규정은 비가입 당사국의 행위에도 규정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확산탄 금지협약의 발효와 한국의 과제 이재승, 2010. 10. 16)

4. 결론 및 건의사항

이에 2015년 신규 편성된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CBU-105) 확산탄 예산 599억6천만원 전액 삭감하는 한편 전투 예비탄 중 2.75 MPSPM, 육군과 해군의 155밀리 BB DP-ICM, 차기 대구경 다련장 사업중 확산탄, K-9자주포 탄약 중 DP-1CM탄 등 구형 확산탄 예산 삭감 및 기 보유한 확산탄 전량 폐기에 나서야 한다.

확산탄 2015 예산 관련

| No. | 구분 | 항목 | 내용 | 예산액 |
|-----------|----------------|-------------|--|-----------------------------|
| 1 | K-9 자주포 | 육군 | DC-ICM BB탄두(K310활성) 63,407발*1,664천원*1.046 | 110,368.2백만원 |
| 2 | 전투예비탄약 | 육군 전투예비탄약사업 | 2.75" 다목적분산탄 000발*000원*1.046 | 6,713백만원 |
| 3 | | 육군 전투예비탄약사업 | 40밀리 이중목적고폭탄 000발*000원 1,138 | 11,120백만원 |
| 4 | | 해병 전투예비탄약사업 | 155밀리 BB DP-ICM 000발*000원*1.046 | 32,002백만원 |
| 5 | 차기다련장 | 육군 | 유도탄(분산) 0,000발('14~'17)*000백만원 *30% | 112,609백만원 |
| 6 | | | 유도탄(분산) 수락시험 시료 00발('14~'17)*000백만원*24% | 677백만원 |
| 7 | 다목적정밀 유도확산탄 | | 유도탄 중도금 \$235,573,194*1,030원*21.7% | 54,252백만원 (\$52,670,495) |
| 합계 | | | | 327,741.2백만원 |

(110) 장거리 대잠어뢰 (1634-308)

1. 개요

(단위 : 백만원)

| 소관 | 사업 성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15년 예산안(B) | 삭감 요구액 |
|-----|-------|---------|----------|-----------------|-----------|
| 방사청 | 계속 | 411,900 | '07~'17년 | 39,828 | 39,828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적 잠수함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거리에서 대잠공격이 가능한 수상함 탑재용 장거리 대잠유도무기 확보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장거리 대잠어뢰는 계속된 시험발사와 실패, 졸속적인 시험평가로 인해 사업 목적 달성이 의심되며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 장거리 대잠어뢰는 2000년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여 개발에만 약 12년이 걸렸고 성능평가와 시험평가를 걸쳐 2012년 전력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첫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2013년 9월까지 실시된 총 7차례 시험발사를 실시했으나 홍상어 12발(연습용 7발, 실전용 5발) 가운데 목표물을 맞힌 홍상어는 8발(연습용 6발 실전용 2발)에 그쳐 사실상 군 사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 2014년 5월 우여곡절 끝에 홍상어 시험발사가 성공했지만 부실 시험평가로 인해 향후 전투용으로 적합유무는 장담하기 어렵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홍상어의 실패원인이 '입수충격'으로 밝혀졌지만 개발 과정

- 에서 가장 중요한 ‘입수충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홍상어는 로켓 추진체로 수직 발사된 후 목표물 상공에서 청상어가 분리되어 목표물을 공격하는 개념인데 이 같이 청상어를 기본어뢰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환경시험평가를 인정하고 충격시험 등을 생략했다.

② 홍상어가 기본어뢰로 사용하는 청상어 역시 부실한 시험평가로 인해 전 투적합유무가 불확실하다.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상어의 경우 환경시험평가도 체계개발계획서와 다르게 시행하고 명중률을 조작하는 등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것으로 들어났다. 시험평가 당시 청상어 4발 중 2발이 실패해 명중률이 50%에 머물자 임의로 한 발을 더 발사해 명중률 합격 기준인 75%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소 4.4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맞혀야 한다는 사거리 기준 역시 임의로 평가항목에서 삭제했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시험평가서를 조작하고 필수 시험평가 제외로 인해 향후 작전효용성이 불확실한 홍상어 2015년 예산 39,828백만원, 청상어 2015년 예산 17,260 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206) 대형공격헬기(AH-64E) (2033-302)

1. 개요

(단위 : 백만원)

| 소관 | 사업 성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15년 예산안(B) | 삭감 요구액 |
|-----|-------|-----------|----------|-----------------|-----------|
| 방사청 | 계속 | 1,904,776 | '12~'17년 | 647,740 | 647,740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 ① 북한군 기갑전력 및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대응전력인 대형 공격헬기를 FMS로 확보하는 사업
- ②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군 기갑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능력 구비
- ③ 북한군 국지도발에 대비한 신속대응 핵심전력 확보
- ④ 노후화된 공격 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방지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사업 목적(필요성)의 잦은 변경

- 군은 2001년부터 대형공격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을 수시로 바꿔 왔다. 이는 대형공격헬기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10년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군은 대형공격헬기사업의 필요성을 ▲육군 보유 공격헬기 도태로 공격헬기 확보 시급 ▲주한미군 아파치대대 철수로 대체전력 확보로 주장하였다.
- 2012년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사업개요에 따르면 ▲ 북한 기갑전력 및 해상 대특작부대 대한 대응능력 구비 ▲ 現用 공격헬기 노후/도태로 공

격헬기 전력공백 심화, ▲ 북한군 기갑부대 중심차단전력, ▲ 해상 대특 작부대 작전 및 국지도발 대비 신속대응전력이 필요하므로 대형공격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 2014년 방위사업청의 대형공격헬기사업 목적은 북한군 기갑전력 및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대응전력인 대형공격헬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 대형공격헬기 도입 사업이 필요하다고 처음 소요 제기했던 2001년부터 군은 타당성이나 경제적 작전적 효율성이 문제가 될 때마다 그 도입 명분을 <노후화 된 공격헬기를 대체용 ⇒ 주한미군 아파치대대 철수에 따른 전력공백 보완용 ⇒ 중심작전용 ⇒ 국지도발 대응용>으로 바꾸어 왔다.

② 사업 목적성 결여

-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북한 기갑·기계화부대 대응전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이다.

- 북한군의 기갑부대는 위협수준은 높지 않다. 장비는 낡았고, 산악이 많은 한반도 전장에서 기습침투를 할 만한 기동로도 거의 없다. 북한의 전차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벽, 지뢰, 전차 등 각종 방어 및 타격무기로 방어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 방위사업청도 “4,100대의 북한군 전차를 파괴하는 임무는 대형공격헬기 뿐만 아니라 공군, 전차, 포병, 소형무장헬기 등이 분담해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3.6.2)

-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서북도서 점령 등 북한의 국지도발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이다.

- 군 내부에서조차 서해5도의 현존 전력과 F-15K 및 국산 경공격기 (FA-50 등) 같은 남쪽의 우세한 공중전력을 고려할 때 남한군의 대응 전력은 북한의 서해5도 기습작전을 방어하고도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북한 입장에서도 서해5도 기습 점령은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데다가 소음이 크고 단발엔진으로 취약한 공기부양정으로 막강한 한미

연합군의 방어를 뚫기 어렵기 때문에 손실만 크고 실익은 없는 군사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한편, 남한군의 합동작전과 매우 협소한 전쟁에서 대형 공격헬기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는 사실상 없다. 오히려 공군이나 해군의 작전에 방해가 될 뿐이다. 설령 효과적인 공역관리를 통해 대형공격 헬기가 작전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북한의 전투기나 대공포에 의해 격추당하거나 심지어 남한군의 화기에 의해서도 격추될 수 있다.

● 노후화된 공격헬기를 대체한다는 사업목적도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헬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

- 또한 산악지형이 80% 이상인 한반도 지형에서, 특히 북의 지대공 요격 능력을 고려할 때 생존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또 중심작전에 필수적인 C4I를 미군에게 의존해야 하는 한국군의 상황에서 중심작전용으로 대형공격헬기를 도입하려는 군의 주장은 허구적이다.
- 또한 주한미군 아파치헬기대대 철수에 따른 전력공백을 보완한다는 사업 필요성도 주한미군이 아파치헬기 대체전력으로 A-10과 F-16, F-15 등 항공전력을 순환 배치해 왔고, 최근에는 카이오와-워리어 무장정찰헬기 대대를 추가로 한반도에 순환배치하고 있어 국방부 주장이 근거를 상실한 바 있다.

② 중복투자, 예산낭비

- 대형공격헬기사업은 한국형 기동헬기사업, 소형무장헬기사업과 중복 투자되는 사업이며, 막대한 운영유지비가 예상되는 경제적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이다.
- 2007년 국방연구원 용역보고서는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운영·유지하는데 연간 8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2015년 이후 본격 운영이 되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한 대당 22억원~27억원으로 코브라 헬기의 운영유지비의 4배이며, F-16의 24억 원에 버금가는 수치다.
- 대형공격헬기사업은 한국형 기동헬기사업, 소형무장헬기사업과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육군 방위력 개선비의 30%를 매년 헬기 전력사업에 쏟아 부어야 할 정도이다.

- 군이 도입하고자 하는 AH-64E는 대만의 경우 대당 670억 원으로 국방부가 총사업비로 산정한 약 1조 9천억 원의 주장비 도입가 1조 2천억 원으로는 18대 밖에 되지 않아 추가 예산 상승이 예상된다.

③ 작전상 효율성 떨어져

- 군이 대형공격헬기사업으로 미 정부와 계약한 AH-64E 36대 중 고작 5-6대만 롱보우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대전차 유도미사일인 헬파이어의 운용에 제한적이다. 그나마 군은 미 정부와 헬파이어 미사일 288발과 스팅어 60발만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어 작전 효율성이 떨어진다.
- 이미 17개 품목의 부품이 단종되었으며 이에 미 육군은 예비부속품 30년치를 미리 구매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AH-64D는 1시간 작전비행을 위해서는 40시간 가까이 정비를 받아야 해서 작전효율성이 떨어진다. 한국과 같은 기종을 이미 도입한 대만은 2014년 4월 조종사 과실로 아파치 헬기가 민가에 추락한 사건이 있었으며, 2013년 12월에도 변속장치 관련 부품 이상으로 운행금지 한 바 있다.

④ 실효성 없는 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문제점

-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추진된 사업이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업일수록 더욱 엄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38조 4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50조 3항에 의거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의 결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국방연구원이 수행하였다. 국방부의 무기 도입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국방부 산하 기관이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재의뢰해야 한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대형공격헬기사업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업 목적(필요성)의 잦은 변경으로 소요제기 필요성이 의문스러우며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목적, 과도한 중복투자과 예산 낭비가 우려되며, 작전 효율성도 높지 않으므로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등 2015년 예산 6,477억4천만 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153) 소형무장헬기(R&D) (1733-305)

1. 개요

(단위 : 백만원)

| 소관 | 사업 성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15년 예산안(B) | 삭감 요구액 |
|-----|-------|---------|----------|--------------|--------|
| 방사청 | 계속 | 692,875 | '11~'22년 | 58,526 | 58,526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육군의 노후 공격헬기인 500MD와 AH-1S를 대체하기 위해 소형민수 헬기와 연계하여 소형무장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
- ② 적 기갑·기계화부대 격멸을 위한 핵심전력으로 공격헬기 필요(방사청, '소형무장헬기 사업추진상황. 2014.6.11)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사업 목적성 결여

-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 : 소형무장헬기사업은 북한 헬기전력에 대한 압도적 우위와 북한 기갑·기계화부대 대응전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이다.

- 남한군의 헬기 전력은 미군 헬기 전력을 제외하고도 북한을 압도한다. 『MILITARY BALANCE 2010』에 따르면 남북한 헬기 보유 대수는 712 : 302로, 남한이 압도적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령 국방부 주장대로 500MD가 2022년에 모두 도태된다 하더라도, 코브라 헬기 60대가 남아 있어 북한의 Mi-24 20대보다 3배가 많은 공격헬기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2016년부터 도입되는 대형공격헬기 AH-64 36가 도입하

게 되어 있어 공격헬기는 다른 그 어떤 무기체계도 누리지 못하는 대북 비교 우위를 누리고 있다.

- 정부는 코브라가 당장의 훈련조차 어렵다며 노후헬기로 인한 전력공백을 주장하지만, 이는 14년 전인 2001년부터 제기된 주장이며, 소형무장헬기 개발도 2022년에야 완료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 북한의 기갑·기계화부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도 이미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남한의 전차는 숫자로는 북한에 비해 열세지만, 대부분이 최신형으로 구형이 주종인 북한 전차전력을 압도한다. 또한 공군전투기, 공대지 및 지대지 미사일 등 북한의 기갑·기계화부대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전력도 충분하다.

② 중복투자, 예산낭비

- 소형무장헬기사업은 500MD 등 노후화된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형공격헬기, 한국형 기동헬기 등과 중복되어, 예산낭비가 심한 사업이다.
 - 군은 2001년부터 육군의 노후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1년에는 대형공격용헬기(AH-64)를 도입하려다가 작전효용성, 사업 타당성이 문제가 되어 폐기된 바 있다.
 - 2005년엔 사업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기동헬기와 공격헬기를 동시에 개발하는 KMH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목적의 불명확성,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지적받고 기동헬기만 먼저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공격형 헬기는 개발이 유보된 바 있다.
 - 2009년에 군은 공격헬기 전력화 방안을 결정하고 대형공격헬기는 해외 구매하고 소형무장헬기는 국내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기동헬기, 소형무장헬기, 대형공격헬기라는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중복투자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2011년~2012년에 소형무장헬기사업에 대한 탐색개발을 마친 후 정부는 산업부와 방사청이 공동으로 민수겸용헬기를 추진하기로 하고, 산업부는 민군겸용구성품을 포함한 민수헬기를 개발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은 민수헬기를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장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 그런데, 민수헬기 사업에 대한 기술성평가가 2012년 하반기 부적합 판

정을 받았다가 2013년 상반기에야 적합 판정을 받고, 2013년 11월에야 민수 헬기를 먼저 만든 뒤 이를 토대로 공격 헬기를 개발하면 경제성이 있다는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와 2014년 2월에야 체계개발기본계획이 결정된 바 있다.

- 이러한 진행경과 사실은 소형무장헬기사업에 대해 십 수년째 잦은 사업 변경과 함께 사업목적의 소요제기가 결여되어 있음을 군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 소형무장헬기사업은 총사업비만 1조5,200억 원 규모로 정부 부담분만 9,200억 원에 이른다.
-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1조9,047억 원 규모로, 미국의 AH-64 36대를 도입하고 있다.
- 한국형 기동헬기사업은 총사업비가 6조 521억 원으로 000대 양산 중이다.
- 대형공격헬기와 소형공격헬기의 운영유지비만 향후 30년간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③ 작전 효율성 떨어져

- 정부의 헬기전력도입 개념인 High-Low Mix 개념에 의하면 소형무장헬기는 지상군과 합동작전을 통한 근접 작전에 투입되는데, 생존성과 무장력이 낮아 비효율적이다.
 -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소형헬기는 계곡풍에도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
 -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전투지형에서 전투효율성이나 생존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게 될 수 있다“ (국회국방위수석전문위원, 『2011년도 방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62~64쪽)
 - 현재 KAI의 주관하에 민수겸용으로 개발 중인 소형무장헬기는 10,000lbs급(약 4.5톤)으로, 대전차 미사일을 0기 정도만 장착할 수 있다. 로켓을 달 경우 미사일 장착률은 1/2로 줄어들 것이며,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무장을 늘릴 경우 소형무장헬기의 장점인 기동성이 떨어지고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소형무장헬기 사업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업 목적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고, 과도한 중복투자와 예산 낭비가 우려되며, 작전 효율성도 높지 않으므로 2015년 연구개발비 등의 예산 585억 2,600만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171) 소형무장헬기공대지유도탄(R&D) (1735-347)

1. 개요

(단위 : 백만원)

| 소관 | 사업 성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15년 예산안(B) | 삭감 요구액 |
|-----|-------|---------|----------|-----------------|-----------|
| 방사청 | 신규 | 112,154 | '15~'20년 | 1,059 | 1,059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22년 이후 전력화 예정인 소형무장헬기에 탑재 운용할 공대지유도탄 확보
- ② 적 위협 고려, 생존성/정밀타격이 우수한 공대지유도탄 필요
- ③ TOW 탄의 생산중단과 수명주기 도래로 성능이 우수한 대체탄 필요
- ④ 세계적인 발전 추세를 고려 사거리 증가, 비가시선 발사, 주·야간 정밀 유도 등 우수한 기능의 공대지 유도탄 개발 필요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사업 목적성 결여

국방부는 '22년 전력화 예정인 소형무장헬기사업에 탑재/운용하여 적기감 및 기계화 부대 타격능력을 보장한다고 하나, 북한 기갑·기계화부대 대응전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원천적으로 결여한 사업이다.

② 소형무장헬기사업과의 연계성으로 중단/폐기 필요

소형무장헬기공대지유도탄 사업은 주 체계인 소형무장헬기사업이 사업 목적성 결여, 타당성 결여, 중복 투자, 예산 낭비, 작전효율성 없음 등의 이유

로 사업 추진 여부가 의문시되기에, 이와 연계되어 중단/폐기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소형무장헬기사업은 2014년 10월 현재까지도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소형무장헬기공대지유도탄 사업의 2015년 예산은 전액 삭감돼도 무방하다.

③ 중복투자

정부는 TOW 탄의 생산중단과 수명주기 도래로 성능이 우수한 대체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미 개발완료된 현궁(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이나 도입타산 중인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과도 도입목적이 북한의 전차/장갑차 무력화로 같다. 특히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사업은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록히드마틴에 도입계획을 유출하여 기소된 바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2,380억원에 달한다.

이에 소형무장헬기공대지유도탄사업은 중복 투자, 예산낭비될 우려가 크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소형무장헬기공대지유도탄사업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업목적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고, 연계된 모사업인 소형무장헬기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타 유도무기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2015년 연구개발비 등의 예산 10억5,900만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K-11 복합형 소총(1132-310)

1. 개요

단위(백만 원)

| 소관 | 사업 성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15년 예산안(B) | 삭감 요구액 |
|-----|-------|---------|---------|-----------------|-----------|
| 방사청 | 계속 | 428,300 | '09~'20 | 29,342 | 29,342 |

2.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

5.56밀리 소총과 20밀리 유탄발사기가 결합된 K-11 복합형 소총을 확보하는 사업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수많은 결함 때문에 국민혈세의 낭비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 K-11 복합형 소총 불량률은 2차 양산분 208정 가운데 41정으로 무려 20%에 달한다. (매일경제, 2011.3.24). 방사청이 K-11 결함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밝힌 이후에도 20mm탄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 국방부는 2011년 폭발 사고 이후 특별감사단을 구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1만여 발의 실사격과 육군의 야전운용성 시험을 통해 K-11 복합소총의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 2013년 11월 말부터 군에 납품을 재개했다. 그러나 2014년 3월 국방과학연구소(ADD) 다락대 시험장에서 시험사격을 하던 K-11 복합소총에서 신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또 발생하여 사격수를 포함해 3명의 장병이 과편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2014년 5월 국방기술품질원이 실시한 ‘K11복합소총 전자과영향성 실험’ 도중 20mm공중폭발탄 격발센서가 시중에서 파는 상용 자석의 자성을 격발신호로 인식하는 결함을 발견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보급할 예정인 전투 헬멧의 헤드셋 마이크 자석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잘못하면 K-11 복합소총을 지닌 병사들이 총기 오발·폭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 계속된 시험평가의 실패와 사고는 K-11소총 결함이 쉽게 해소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핵심기능 발휘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전력화에 차질을 빚는 K-11소총은 국민 혈세만을 낭비하는 사업이다.

② 수년간 국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양산을 재개하여 비리 의혹이 많은 사업이다.

- 국방위 김장수 의원, “2차 생산물량의 불량사유를 보면 도저히 K-11양산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세계일보, 2010. 10. 23)
- “결함에 대한 검증 및 보완여부를 확인하고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권고”(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Ⅲ』, 56p)
- 김광진 의원, “지난 7월 사업관리분과위원회 국방기술품질원만 사업추진 재개에 대해 반대하자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 업무를 국방과학연구소(ADD)로 변경했다”고 의혹을 제기(연합뉴스, 2014.10.20.)
- 또한 K-11은 2011년 10월·2014년 3월 두 차례 폭발사고 후 탄약과 총기를 모두 개선해야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점이 확인됐지만 결함을 무시하고 탄약 생산이 함께 이루어 졌다. 방위사업청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탄약 이상이 의심됐음에도 구입사업을 계속한 것은 방산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된다.

③ 설령 개발에 성공 한다 해도 비용대비 성능 효과가 의심된다.

- K-11 복합형 소총은 K2소총/40mm 유탄 발사기(K201)를 대체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K-11 복합형 소총의 1정당 가격은 약

1500만원으로 K2 초기 납품가 15만원의 100배에 달한다. 미국도 복합 소총(XM29)를 1만달러 정도에 구입할 계획이었지만 가격이 3만달러를 넘어가 개발을 포기했다.

- 한편 20mm 공중폭발탄은 40mm유탄의 탄속보다 3배(200m/s : 74.7m/s) 빠르고 40mm 유탄의 곡사형 탄도와 달리 직사형 탄도를 획득함으로써 유개 참호, 건물 뒤에 숨은 적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졌다고 하나 20mm 폭발탄의 위력은 40mm유탄보다 훨씬 떨어지고 5.56mm소총의 관통력과 사거리도 K-2소총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④ 국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큰 비인도적 무기다.

- 복합형 소총은 시가지 건물이나 유개 참호 뒤에 숨은 표적의 4~5m 높이에서 탄을 공중 폭발시켜 확산된 파편으로 다수의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체계로 K-11의 핵심은 6발의 20mm 공중폭발탄을 연속적으로 폭발시켜 다수의 인명을 살상하는 기능에 있다. 이러한 복합형 소총을 도심 시가전에 사용할 경우 전투원은 물론 일반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 20mm 공중폭발탄두 중량은 100g(군사연구, 『MILITARY REVIEW』, 49쪽, 2008. 7)로 육군 또는 해군이 “400g 이하의 작열성, 폭발성 또는 소이성 물질을 충전한 발사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성 피츠버그선언에 반한다. 또 복합형 소총은 국제관습인도법에서 금지하는 무차별 공격 금지 -‘성질상 과도한 피해와 불필요한 희생을 야기하는 전투의 수단과 방법의 사용은 금지된다’- 규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⑤ 결론 및 건의사항

이에 K-11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2015년도 예산 2백9십3억4천2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만이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53) 제주 민·군복합형관관미항 건설사업(1234-301)

1. 개요

(단위 : 백만 원, %)

| 소관 | 사업성격 | 2014년 예산 | 2015년 예산안(B) | 증감(B-A) | 삭감요구 액 |
|-----|------|-------------|-----------------|---------|-----------|
| 방사청 | 계속 | 256,470 | 298,056 | 41,586 | 대폭 삭감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북한 도발 억제.
- ② 이어도 남방해역과 해양교통로에 대한 감시 및 보호.

3. 타당성 없는 해군기지 사업 목적

1) 북한 도발 억제 주장의 허구성

제주해군기지는 휴전선과 NLL로부터 500km 정도 떨어져 있어 해상, 수중, 상륙, 중심 공격 등 해군의 어떤 성분작전에 대해서도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기지라는 주장은 남방해역과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육지기지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제주해군기지가 한층 유리하다는 국방부 자신의 주장에도 모순된다.

2) 이어도 해양 주권 보호 주장의 허구성

이어도는 수중 암초여서 영토, 영해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 EEZ 문제는 유엔 해양법에 의거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미 한중간에 오랜 기간에 걸쳐 협상 중에 있다.

3) 남방해역 보호의 허구성

- 남방해역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지 않아도, 즉 육지기지에서 발진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 해·공군에 비해 시공간적으로 유리한 작전환경에서 작전할 수 있다.
- 목포→이어도 340Km, 15.5시간 : 중국 영파→이어도 398Km 18시간 : 일본 사세보항→이어도 450km, 21시간 : 진해→이어도, 중국 영파와 비슷.

4) 해양수송로 보호의 허구성

- 국가에 의한 해양교통로 위협을 상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한중간 교역량이 미·일간 교역량 합산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양자가 해상로 봉쇄 등을 강행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중국, 일본 등이 해양교통로를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그들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전제다. 설령 중국 등이 해양교통로를 봉쇄한다고 해도 우리 해군력으로는 이를 돌파할 수 없다.
- 중국은 해군력에서 우리에게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나 남중국해가 근해여서 해상작전에 대한 공군 등의 지원과 군수지원이 용이한 반면 우리는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이들 해역에 대한 중국의 전력 및 작전 환경의 우위는 앞으로도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 해적 대응을 위해서는 굳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해경의 임무로 되며, 말라카 해협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적에 대한 대응은 제주에서 출동하든 부산에서 출동하든 그 차이는 무의미하다.

5)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

-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 작전과 한미일 해군협력의 전초기지로 이용되어 동북아에 핵군비경쟁과 군사대결을 불러오고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에 휘말릴 가능성 높다.

4. 예산 삭감 이유와 근거

1) 예산 부대의견의 상습적 위배와 제주도정 공약 위배

- 애초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국회 부대조건은 제주해군기지의 성격

과 기능을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규정(2007. 12. 28)하고 있음. 기항지 성격의 민·군복합항을 건설하는 경우 현재의 육상시설과 항만시설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

- 그러나 국방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국가정책조정회의, 2008. 9. 11)을 건설한다는 구실아래 군항위주의 민·군복합항 건설을 추진해왔다. 현재 국방부는 민·군복합항 건설이라는 약속마저 과기하고 전적으로 군항으로, 나아가 (미) 항공모함이 입항(시공업체인 대림이 제출한 ‘08-301-2 시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2008. 9. 11)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을 공약한 제주도-국방부-국토부간 기본협약서(2009. 4. 27)를 위배한 것이다
- 국회 국방위는 2014년 예산 부대조건으로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 사업은 총사업비 1조 828억 원의 95%인 1조 294억 원이 방위사업청 예산이고, 나머지 5%인 534억 원이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부처별로 민·군복합항에 부합하도록 총사업비를 분담”하도록 결정하였다.
- 이는 국회가 제주해군기지의 기능과 성격을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하고 “군항위주로 운영될 우려를 불식”하도록 요구한 예산 부대조건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국회가 예산에 대한 통제를 통해 민항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 국방부와 해군은 부대조건 미 이행의 이유로 관련 법률의 미비(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기계획의 편성 등)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주장은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기로 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또 해수부가 지금까지 항만건설 중기계획에 강정 민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부처별 예산분담방안을 마련하라는 2012년 국회의 지적사항, 2013~2014년 국회 부대조건을 고의로 무시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또한 정부주장은 제주해군기지를 “민항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하겠다는 제주도정의 공약((제주특별자치도, 국회부대의견(기항지)관련 강정마을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 2014. 10. 23)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국회는 국방부의 상습적 부대 의견 미 이행의 책임을 물어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2) 15만 톤 크루즈선 운항 안전성 검증 안 돼

① 항만 안전성을 위협하는 설계 오류와 서측 돌제부두 설계 변경 미 이행

- 이명박 정부는 2008. 9. 11 국가정책조정회의, 2009. 4. 27 <국방부·국토부·제주도간 기본협약서(MOU)>를 거쳐 15만 톤 크루즈선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규모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공약했다.
- 2010. 10. 4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제주민·군복합항의 선회장은 규모가 작아(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을 위배하고 1.5L로 설계) 15만 톤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입·출항과 접·이안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항로가 직각에 가까운 77°로 설계되어 안전운항을 현저히 위협하는 문제점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 국회 예결위 강정소위의 권고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2012. 1. 26~2. 14)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일부 기술 검증위원들은 15만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과 접이안을 위해 선회장 확대와 항로 변경,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총리실은 설계 변경과 공사 중단을 막으려는 해군의 의도에 맞게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위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은...대안”(기술 검증위 4차 회의록)을 요구하여 선회장 확대 의견을 묵살하였다.
- 또 일부 위원들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게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것을 요구함. 풍압면적 등을 실제보다 작게 입력하여 나온 해군의 1차 시뮬레이션 결과(2009. 3~6)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수행한 2차 시뮬레이션(2012. 2. 14) 역시 15만톤 크루즈선의 운항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2012. 2. 29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운항 안전성 검증 2차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초하여 설계오류를 일부 인정하고 “크루즈선의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하기 위해 항만내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조정하고 항로 범선 역시 77°→30°로 변경”할 것을 결정하였다. 즉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한 결과 항 내부 서측 돌제부두가 없어야 15만 톤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 그러나 2013. 1. 31 서측 돌제부두를 아예 없앤 상황을 가정한 3차 시물레이션에서도 “15만 톤 크루즈 운항 시 항 입구부에서 압류 현상이 나타나거나 최악의 조건에서는 예인선 2척이 필요”(‘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물레이션 시현보고서’, 15~17쪽)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15만 톤 크루즈 운항 안전성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 따라서 서측 돌제부두 설계를 고정식→가변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15만 톤 크루즈선의 안전운항과 이를 통한 민항기능 보장을 위한 교육지책이라 할 것이다.
- 그런데 해군은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2014. 6월말까지도 이 부두의 설계변경을 위한 기본 설계조차 수행하지 않았으며(연합 2014. 6. 11), 2014. 10월 현재 부두설계를 가변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만약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변경한 조건에서도 15만톤 크루즈 운항안전성이 위협받는다면 제주민·군복합항은 최소한의 민항기능도 수행하기 어려운 불능항으로 되고,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를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하겠다는 해군의 공유수면매립계획의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만큼 공사가 더 이상 진척되기 전에 시급히 설계 변경과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② 30° 변경항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천연기념물 421호 침범

- 30°변경 항로는 저수심대와 각종 보호구역을 지나게 되는데 변경 항로가 제주해군기지의 항로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다.
- 변경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442호 제주연안연산호 군락,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서귀포 해양 도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을 가로질러 이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가 자명하다.

- 한편 15만 톤 크루즈 선박은 물론 대형 군함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서는 변경항로(저수심대)의 준설 및 암굴착은 필수 요건이나 변경항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항로가 변경된 후에 실시된 2차, 3차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환경적 피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것이다.
- 만약 변경 항로가 환경상, 법적 절차상의 문제로 제주해군기지의 항로로 기능할 수 없게 되면 변경항로를 전제로 한 해군의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 안전성 주장도 설자리를 잃게 된다.
- 따라서 국회는 변경된 항로를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관련 당국에 요구해야 마땅하다.

3) 진상조사와 갈등해결을 바라는 제주도민 의사 무시

- 제주도민과 전문가들은 원희룡 제주도정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2번째 현안으로 강정민·군복합항 갈등해결을 꼽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 주요 현안대응 및 지역발전 대안마련을 위한 제주도민 및 전문가 여론조사, 2014. 7. 22). 원희룡 도정의 강정해군기지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공약은 이와 같은 여론에 토대한 것이다
-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사업추진 절차, 주민동의 과정, 타당성을 결여한 입지 문제 등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사업 추진에서 시작됐으며 갈등해소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 채 해군기지 반대주민들에 대한 협박과 탄압, 물리적 공권력을 앞세운 공사 강행으로 증폭되어온 것이다.
- 또 15만 톤 크루즈 2척 접·이안 및 입·출항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술검증위원회 운영 및 보고서 채택, 3차례의 시뮬레이션 검증과정은 설계오류 의혹을 덜기 위해 정부가 데이터를 조작하고 보고서 결론 채택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부가 자초함으로써 갈등을 악화시켰다.
- 따라서 제주민·군복합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가 강정해군기지 유치 당시 마을총회의 적절성 여부,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여부,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적절성 여부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입지선정 과정, 15만 톤 크루즈 운항 안전성 관련 검증 과정에서 야기된 국민적 의혹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는 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 관사 사업

① 강정마을 내 군 관사 건립은 대표적인 주민 반대사업

- 강정마을 안 군 관사 건설은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업이다. 예컨대 애초 해군이 군 관사 건설 부지로 선정한 E지구 토지주 24명 중 21명이 토지 소유권 이전(매매, 양도)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관할청에 제출한 바 있고, 2012. 6. 10 군 관사 유치 여부에 대한 강정마을 총회 결과 주민 98%가 반대하였다. 2013. 4. 10에는 해군기지 찬성 주민까지 참석한 가운데 '군 관사 유치 여부 및 설명회 개최 여부'에 관한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145명의 총회참석 주민 중 118명 중이 투표에 참가 반대 114명, 군 관사 유치를 찬성 3명, 무효표는 1명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강정마을은 군 관사 건립에 그 어떤 사업보다도 강한 거부 의사를 갖고 있다
- 실제 강정마을회는 3차례의 군 관사 사업 설명회(1차 2012. 5. 29, 2차 2012. 6. 15, 3차 2013. 3. 26)를 모두 무산킨 바 있다. 따라서 해군이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짓밟고 2013. 8. 19 군 관사 건립사업계획 공고에 이어 2014. 10. 14일자로 공사를 착공한 것은 갈등을 새로운 차원으로 증폭시키는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마을안 군 관사는 제주해군기지의 외연적 확장이자 또 다른 형태의 침탈 또는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행위로 규정”하여 군 관사 공사 중단을 위한 24시간 공사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② 편법 공사 논란으로 갈등 증폭

- 강정마을 B지구 72세대 군 관사 공사는 해군이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한 편법공사로 공사 강행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한 갈등이 악화 될 수밖에 없다.
- 해군은 주민반대로 국방부의 사업 승인절차가 지연되자 내부적으로는 강정마을 B지구 100,000㎡ 부지에 380세대 관사 건립계획(2013. 10.

21 장하나 의원)을 세워놓고도 걸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10,000㎡ 미만에 해당되는 72세대 규모 9,400여㎡로 축소해 사업을 고시(2013. 8)하고 국방부의 사업 승인(2013. 10)을 거쳐 2014. 10. 7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다.

- 2014년 예산안 심사때 국회가 “주민협의를 안했다”는 이유로 군 관사 공사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실에 비추어 B지구 9,400㎡ 72세대 공사는 해군이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회피함으로써 주민반대라는 벽을 넘어 예산을 타내려는 꼼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 한편 총 650세대의 군관사(아파트)를 확보한다는 해군의 계획이나 민군 복합항의 성격과 기능에 맞춰, 민항기능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대폭 수정되어야 하며 필요시 기지내부에 건설 중인 900여 세대에 이르는 숙소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이에 군인 아파트 건립을 즉각 중단하고 군 관사 공사 예산 98억 1,900만원, 군 관사 공사 감리비 3억 4,700만원, 서귀포 시내 185세대 군인 아파트 매입비용 364억 4,2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군 관사 건설 공사 지역>

5) 환경오염 저감 대책 없는 항만공사

- 강정마을회와 국제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조사팀이 2014. 6. 11~13일 공사현장과 서건도·범섬·강정등대 앞바다를 조사한 결과,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 물속에 가라앉아 있고 연산호 서식지에 부유물질이 유입되어 있으며 방파제 건설로 조류가 느려지는 등 수중환경이 바뀌어 연산호의 서식 환경이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사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과 오탁방지막은 바다 속에서 방치된 상태이며 오염물질도 아무런 관리 없이 바다 속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와 관련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관리하는 제주도 사후 관리조사단이 6. 13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해군은 상부지시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해군의 행태는 환경영향평가법 상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을 위배한 초법적 행위로 환경 훼손 실태를 덮고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
- 이에 국회는 항만공사예산 삭감을 지렛대로 삼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하며 생태계 보전과 연산호 군락지 보호 대책을 마련 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리단의 부실한 관리 책임을 물어 항만공사 감리비 21억여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6) 집행실적 부진과 연례적 이월 가능성

- 한편 2014년 8월말 기준 제주민·군복합항 예산 집행률은 43.7%, 예산 현액 2,683억 원 집행액은 1,173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4년 예산 현액 2,683억 원의 96.5%에 해당하는 시설공사비(2,592억 원)의 집행률이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2012년 불라벤 태풍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 해상에 설치된 방파제 축조용 대형 구조물인 케이슨 7기가 파손된데 이어 2014년에도 케이슨 3기가 태풍 너구리(최대 풍속 19.5m/s)의 영향으로 밀려나거나 기울어지는 등의 태풍으로 인한 항만공사 공사 지연이 그 1차적 요인으로 추정된다.

- 이는 태풍의 길목에 있는 강정항의 입지조건상 제주민·군복합항 예산의 불용 또는 이월 가능성은 상수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11~2013년 최근 3년간 주민 반대, 공사 부진 등으로 제주 민·군복합항 예산 집행률은 평균 73%에 불과하다.
- 이에 더 늦기 전에 2015년 항만 공사비 964억 원을 대폭 삭감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입지타당성에 대한 재조사를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과 제안

- 1) 국방부와 해군의 상습적 국회 부대조건 위배 책임을 물어야 한다.
- 2)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서측 돌제부두 설계변경이 지연된 이유와 15만톤 크루즈선의 운항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변경항로가 제주해군기지 항로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속한 환경적,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 3) 제주 민·군복합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이 제시한 강정해군기지 유치 당시 마을총회의 적절성 여부,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여부,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적절성 여부는 물론 입지선정 타당성 여부, 15만 톤 크루즈 운항 안전성 관련 설계오류 및 시뮬레이션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데이터 조작 의혹과 외압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데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제주도정의 진상조사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 4) 민·군복합항의 성격에 맞게 부대 규모를 조정하고 이에 맞춰 군 관사를 포함한 육상시설 및 항만시설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 5)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 관사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사 예산 98억 1,900만원, 군 관사 공사 감리비 3억 4,700만원, 185세대 군인 아파트 매입비용 364억 4,2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 또 이월 또는 불용 가능성이 높은 항만시설 공사비 964억과 육상시설 공사비 1,128억 원을 대폭 삭감하고 선 생태계 및 연산호 보호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며 감리단의 부실한 관리 책임을 물어 항만공사 감리비 23억, 육상공사 감리비 23억도 삭감해야 한다.
- 6)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예산, 즉 사업 추진비 중 지역주민 초청행사, 외빈방문행사, 갈등관리 활동비 등 약 1,100만원과 간접비 중 홍보책자/전단지제작비, 홍보물품 제작비, 신문광고 등의 홍보비 3,65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7) 2012년 볼라벤 태풍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 해상에 설치된 방파제 축조용 대형 구조물인 케이슨 7기가 파손된데 이어 2014년에도 케이슨 3기가 태풍 너구리(최대 풍속 19.5m/s)의 영향으로 밀려나거나 기울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것은 입지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 및 해군협력의 전초기지로 활용되어 동북아에서 핵군비 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이 기지의 입지적, 군사적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